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 5 판

2021. 12. 14.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동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각단계에 대한 임시 기본 가이드라인이므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를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환자 건강모니터링, 응급상황 시 조치사항,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생활환경 관리, 격리관리 등을 안내하고자 「대한소아감염학회」등의 자문을 거쳐 제작하였음
- 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준용하여 제작하였음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5판 주요 개정사항

목차	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 근거
I. 개요	<개정> ☐ 재택치료 중 건강 및 격리관리 ◦10일(건강관리+격리관리) <개정> ☐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방안 ◦재택치료관리팀 내 건강관리반 및 격리관리반 구성	☐ 재택치료 중 건강 및 격리관리 ◦7일(건강관리+격리관리)+3일(격리관리) ☐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방안 ◦재택치료추진단(단장: 부단체장) 내 재택치료 인프라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구성	
II. 대상 및 기준	<개정> ☐ 재택치료 대상자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자 - 단, 60세 이상은 예방접종 완료, 돌봄 가능한 보호자 공동격리 가능한 경우 <개정> ☐ 대상자의 입원요인(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 -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원 등 병상배정 ☐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III. 환자 관리	<개정> ☐ 비응급 이송수단 ◦구급차 등 <신설> <개정> ☐ 의약품 전달 체계 ◦보건소 전달 <개정> ☐ 재택치료키트(소아용, 12세 미만) 구성품 ◦해열제(시럽), 손소독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개정> ☐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 격리 ◦(재택치료자) 10일 ◦(공동격리자) 예방접종완료자 10일, 예방접종미완료자 20일 <개정> ☐ 공동격리자 외출 ◦재택치료 기간 중 불가	☐ 비응급 이송수단 확대 ◦구급차, 지자체 관리 이송수단(방역택시 · 콜벤 등), 개인차량 ☐ 단기 · 외래진료센터 지정 ◦건강보험 수가 및 격리입원치료비 적용 ☐ 의약품 전달 체계 개선 ◦보건소 전달 또는 지역약사회에서 재택까지 배송가능 ☐ 재택치료키트(소아용) 구성품 변경 ◦산소포화도측정기 제외 ☐ (7+3) 재택치료 격리관리 수준 개선 ◦(재택치료자) 10일→7일(현행)+3일(자가격리) * 건강모니터링 8일째 종료 가능 ◦(공동격리자) 예방접종완료자 7일, 예방접종미완료자 17일 ☐ 공동격리자 필수 외출 허용 ◦본인 진료, 약 수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5544(2021.11.11.), 36699(2021.11.19.), 37844(2021.11.26.) 39223(2021.12.4.), 40456(2021.12.1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11.26., 2021.12.1.)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05 (2021.12.1.)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2668(2021.12.1.)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05 (2021.12.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12.8.)
IV. 생활환경 관리	<개정> ☐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 <개정> ☐ 폐기물 배출 시점 ◦재택치료 종료 3일 후	☐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대상 생활지원비 추가지원 ☐ 폐기물 폐기물 배출 시점 ◦재택치료 종료 후	
서식	<개정> ☐ 서식 ◦ 서식 9 입원(격리) 외래비용 신청서	☐ 서식 ◦서식 9-1, 9-2로 분리 ◦서식 14, 15, 16, 17 추가	

목 차

I. 개요	2
1. 배경 및 목적	2
2. 개념 정의	2
3. 근거 법령	2
4. 흐름도	3
5. 전담조직 구성	5
II. 대상 및 기준	6
1. 대상자 및 보호자 기준	6
2. 생활환경 기준	7
III. 환자 관리	8
1. 기본원칙	8
2. 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8
3. 재택치료 통지 및 교육	9
4. 건강관리 및 재택치료 유형	12
5. 격리관리	16
6. 응급상황 대비	20
7. 재택치료비 지원	23
8. 재택치료 해제	25
IV. 생활환경 관리	27
1. 방문자 관리	27
2. 생활 관리	27
[서식]	29
[참고]	57
[부록1] 코로나19 재택치료 업무 매뉴얼	
[부록2]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별첨)	

1. 배경 및 목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개정(' 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안내서(제4판)부터 ‘자가치료’의 시행상 용어를 “재택치료”로 명명함
-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환자 등에 대한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개념 정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재택치료’는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함

3.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 동법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동법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동법 시행령 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 <참고 1> 재택치료 근거 법령

4. 흐름도

- 기본 체계는 입원(입소)치료와 유사한 체계 및 절차로 진행
 - 기초조사 → 환자분류 → 재택치료(건강관리·격리관리)* → 필요시
단기·외래진료센터 → 격리해제 또는 중증화시 의료기관 이송

* 재택치료(10일): 7일 (건강관리+격리관리)* + 3일 (격리관리)

☞ 건강관리는 첫 7일간만 실시

단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기간 연장 가능

※ 관련근거 ‘코로나19재택치료자 건강관리기간 운영 관련 긴급 안내’ (중수본-39223)

<재택치료 흐름도 >



< 재택치료 절차 및 내용 >

절 차	내 용	담당기관
재택치료 대상 확정	- 중증도 확인(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의료진의 검토 요청) -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설문지, 상태기록지 등 기초조사 - 재택치료 대상자 여부 조사·확인하여 결정, 병상배정반 통보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보건소 재택치료추진단
↓		
재택치료 통지	- 격리 통지서 발급 (필요시 공동격리자 지정) -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관리의료기관(건강관리) 지정 - 재택치료 안내문 전달 및 생활수칙 교육 - 재택치료 담당자 및 의료기관 연락처(비상연락망) 제공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
	-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 확인 - 환자상태 기록지, 환자 관리대장 등 필요서류 작성	관리의료기관/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
물품지원 및 교육	- 재택치료키트, 생필품 등 지원물품 전달 - 전담공무원 지정 및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재택치료추진단 (격리관리반)
↓		
건강관리	- 초기문진 실시 (고위험군 분류시 재배정 요청) -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모니터링(1일 2회) 및 결과 입력 - 비대면 진료(증상 발생시) - 외래진료 및 단기 입원진료(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항체 치료제 투여, 대면진료 등 집중 진료·관리 필요시) - 응급이송 판단 및 요청(→시·도 병상배정반/보건소)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 협력의사)/ 관리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격리관리	- 자가격리 앱 상 각종 알림 시 이탈 여부 확인 - 이탈 시 위치 확인 및 귀가 등 조치(경찰 등 협조) - 무단이탈 등 지침 위반시 안심밴드 착용·관리 - 일일 모니터링 결과 보고(관계부서, 기관)	재택치료추진단 (격리관리반)
↓		
이송 (필요시)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가능 병원 확인 및 통보	재택치료추진단 시·도 병상배정반
	구급차 등 이송수단 확보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
↓		
재택치료 종료	-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 상태 평가 - 재택치료 해제여부 판단	연계 의료기관 협력의사
	- 재택치료 해제 안내 및 시스템(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 시스템) 입력 - 재택치료 해제 확인서 발급(필요시)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

5. 전담조직 구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부단체장이 총괄·책임지는 ‘재택치료추진단’ 반드시 구성·운영 (※중대본보고자료, 12,8)

※ 건강관리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 전담조직 구성·운영 필요

- ① **(재택치료인프라반)** 재택치료 대응계획 수립·시행·총괄, 관련 의료기관 확충·관리, 응급전원용 병상·확보 관리, 이송수단 확충, 처방약 관리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 발굴·시행
- ② **(건강관리반)** 재택치료대상자 통지 및 안내, 의료기관 연계, 단기외래진료센터 예약, 이송 지원, 병상대기자 관리 등 건강관리 전반 운영
- ③ **(격리관리반)** 전담공무원 지정·관리, 통계관리, 자가격리앱, 안심밴드 등을 활용하여 이탈관리, 재택치료키트 지원물품 전달 등



* 팀장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부서 또는 격리관리, 행정지원 등 담당부서에서 수행

1. 대상자 및 보호자 기준

(1) 재택치료 대상자

-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함(증수본-37844, 21.11.26)
 -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셰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 관련근거: 코로나19 대응지침 수정의견 송부 (증수본-40456, 2021.12.13.)

(2) 공동격리가 가능한 보호자 및 동거인

- (보호자) 보호자로서의 공동 격리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 돌봄에 제한이 있는 자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대상자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자
- 방역수칙의 준수에 제한이 있는 자

*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1인(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며, 돌봄 부담을 감안해서 추가 지정 가능

※ 재택치료 대상 수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 필요

※ 확진자 중증장애인이 재택치료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하는 등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보호자가 신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입원·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확진자와 공동 입원·시설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

- (보호자 외 동거인) ▲입원요인이 없고 ▲가정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 가능

*단, 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어야 함

※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 재택치료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자가격리할 수 있음

- 공동 격리자(보호자 및 동거인)가 예방접종미완료자인 경우, 재택치료자의 건강 관리가 끝나는 날(7일) 이후 추가격리(10일) 필요

* 재택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고 8일차 부터 자가격리로 전환

2. 생활환경 기준

- 재택치료 대상자와 보호자(공동 격리자)는 가급적 필수공간(화장실* 등)을 분리하여 사용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

◆ 확진자가 타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화장실, 주방 확보 여부 확인

1. 기본원칙

-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격리 관리를 총괄하는 재택치료추진단 반드시 구성·운영
 - * 건강관리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 전담조직 구성·운영 필요
- 건강관리는 1일 2~3회 실시하며,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 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유선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증상 모니터링, 참여의료기관 비대면진료(전화상담) 등 활용가능
- 격리관리*는 재택치료추진단 격리관리반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유선, 불시방문, 안심밴드 등 활용가능
 -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시·도)재택치료 배정사실 / (시·군·구)재택치료 시작 - 격리해제 입력

☞ <참고 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방법

2. 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 재택치료 관련 이외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이하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방안에 따름

-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시 환자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
 - *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
 - * 입원요인 판단은 의료진(보건소 또는 관리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을 것
- ☞ <서식 1> 재택치료 대상 분류 시의 추가 질문지 및 환자 상태 기록지
 -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배정하고, 생활수칙 의무부과 후 위반 시 제재조치 실시
 -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재택치료예정지 관할 보건소가 다른 경우 진행 예시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재택치료예정지 관할 보건소 간 기초역학조사서, 환자정보관리시스템(HIRA) 이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예정지로 확진환자 이송
- 재택치료예정지 관할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진행

3. 재택치료 통지 및 교육

- 재택치료추진단은 재택치료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 제공, 치료기간 동안 절차, 유의사항, 생활수칙, 비상연락망* 등 안내

☞ <서식 2> 입원·격리 통지서, <서식 3> 격리통지서 수령증

※ 공동 격리자도 격리 통지서 발급 대상임

* 격리통지서 발급·전달 후 수령증에 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재택치료키트와 함께 발송한 수령증 서명 사진 문자 회신 등으로 갈음 가능)

* 응급상황 대비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팀, 협력의사·관리의료기관 등으로 구성

◆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구 재택치료추진단)

★★24시 응급콜★★ (1) ○○병원 000-000-0000/ (2) ○○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임을 밝히세요.

☞ <참고 3> 재택치료 안내문

-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 건강·격리관리 모바일 앱 설치 및 사용방법 안내
- 의료진이 건강모니터링 중 보호자 건강이상 감지시 비대면 진료 안내 및 즉시 연계

* 보호자는 매일 2차례 이상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 및 자가격리앱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

- 환자 정보를 확인하여 환자 상태 기록지 및 환자 관리 대장 작성

☞ <서식 1> 환자 상태 기록지, <서식 4> 재택치료 환자 관리 대장(예시)

<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절차 >

역할	주체	세부내용
① 기초조사 · 대상자 결정	보건소	· 기초역학조사 및 재택치료 가능 여부 평가 (입원요인, 거주 환경 등) · 보건소 의료진 또는 관리의료기관 의견 들어 대상자 결정
② 대상자 통지·안내	재택치료 추진단	· 보호자, 공동 격리자 지정 · 입원·격리 통지서 발급 및 재택치료키트 제공 · 앱 설치 지원, 필요사항 안내
③ 재택치료 시작	관리 의료기관	· 대상자 정보 확인 및 초기 문진(필요시 재배정 요청) · 환자상태 기록지, 환자관리 대장 작성 등 건강관리 시작 · 응급상황 대비 비상대응체계 안내(연락처 제공) · 재택치료 안내문, 생활수칙 교육, 앱 설치 지원

◆ 재택치료 보호자용 주요 생활수칙 예시

☞ <참고 3> 재택치료 안내문 (예시)

- **(건강상태)** 보호자는 매일 2차례 이상 환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 재택치료 전담팀·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3회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감염예방)**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자주 손 씻기
 - 아이의 구토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 * 마스크(KF94, N95 이상 또는 동급이상),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 ※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음
 - **(개인용품)** 비누·수건 등 세면도구, 침구류, 식기 등의 개인용품은 확진자와 분리 사용
 - **(식사)** 확진 환자와 함께 식사하지 않고 별도로 식사
 - **(수유 및 이유식)**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이 아닌 젖병·용기는 사용 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철저히 세척
 - 확진 소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하며, 엄마도 확진자인 경우 직접 수유 가능
 - 엄마는 확진자가 아닌 경우, 유축 수유를 권장하며 손위생 준수 필요
 -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
 - **(검사)** 보호자(공동 격리자)는 확진자가 격리해제시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추가 격리 및 검사
 - 코로나19 증상이 발생 시 재택치료 전담팀(보건소)로 연락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세탁)**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세탁물을 만지며 개인별 세탁물은 단독 세탁, 세탁하지 않은 의류가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 재택치료 기간 중 착용한 의류는 재택치료 해제 후 반드시 세탁 후 착용
 - **(청소 및 소독)** 격리 기간 동안 일 1회 이상 격리장소 청소 및 자가소독 시행
 - 소아가 자주 만지는 환경은 표면 소독 실시(소독용 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는 천으로 자주 닦기)
 - 격리치료 해제 시 재택치료 장소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시행
 -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 ② 재택치료 종료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외부 소독 및 이중밀봉 후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① 품목별로 소독 후 분리 보관 ②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
- ☞ <참고 5>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 **(환기)** 정기적, 지속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4. 건강관리 및 재택치료 유형

▶ (무증상) 확진일 이후, (경증) 증상 발생 후 7일간 건강관리
+3일간 자가격리 실시

- 지자체 확진자 규모, 가용 의료자원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결정하고,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정

☞ <참고 6> 재택치료협력의사·관리의료기관 안내문

<서식 5>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신청·변경서

<서식 6> 재택치료협력의사 지정서

<서식 7> 재택치료협력의료기관 지정서

구분		(유형1) 지자체 주도형	(유형2) 의료기관 주도형
구성 방식		• 지자체 건강모니터링 전담팀 (간호사 고용) 구성(24시간 운영) •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 민간의사* ('재택치료협력의사')	•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건강 관리	모니터링	지자체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진료	재택치료협력의사	

※ 각 지자체에서는 확진자 발생 규모, 병상·생활치료센터 가동률(단, 각각 50% 이상인 경우 재택치료 확대 권고), 재택치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 가능

- 유형1, 유형2 모두 재택치료 대상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 간호사 3~5명 배정 권고
 - 반드시 지자체 전담팀, 의료기관 모두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이 가능한 인력운영체계 마련
- 건강모니터링 + 비대면진료 실시

① (대상자 등록·문진) 재택치료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의료진이 건강상태 문진 실시 →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 또는 의료기관 전원 실시

* 역학조사서상 입원사유가 없었으나, 대상자 등록·문진 과정에서 입원사유 발견, 증상 악화 경우 등

- 유증상 발생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도록 응급연락체계 사전 안내 강화

* 체온 재측정 후에도 37.5℃ 이상, 발열·기침·인후통·숨가쁨(호흡곤란) 등의 증상 등

② (건강모니터링) 24시간 동안 환자의 이상징후 등을 모니터링 하고, 1일 2회 ‘진료지원시스템’에 결과를 입력

-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확진자의 체온, 산소포화도(만 12세이상) 등을 측정하도록 안내하고, 건강 모니터링 시 측정값 확인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도를 통해 재고 및 정기 수요조사 시행 후 배포

*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정상 작동여부 및 측정 수치 반드시 확인

☞ <참고 7> 재택치료키트 구성품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모바일 앱에 매일 입력하는 경우* 1회 대체 가능(1일 1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정상 작동여부 및 측정 수치 반드시 확인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모니터링 8일째 종료 가능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은 1일 3회 실시*

* 집중관리군은 2회 유선통화, 오전(9시 이전, 유선) - 오후(앱) - 취침 전(유선)

③ (진료)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의사가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 및 처방 실시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 불가

- 유증상 지속 등 전원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취침 전 1회 이상 추가 전화 확인 등 실제 전원 전까지 관리 강화*

* (참고)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 환자 중 유증상 환자를 집중관리(통상 40~45%)하고 있으며, 전원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가 많아 위중도 순으로 전원 요청

- 이상 징후 발견시 영상통화로 안부를 즉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실시, 대면진료 필요* 또는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

* 외래를 통한 검사, 주사제 처방, 투약 등 필요한 경우

- 야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당직 의사가 없거나 비상주(전화 대기)하는 것은 지양

- 교대 근무로 담당이 바뀌는 경우 의료진 간 환자 상태 공유 및 업무 인수인계 철저 수행

- 기저질환 등으로 환자에게 처방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 또는 대리처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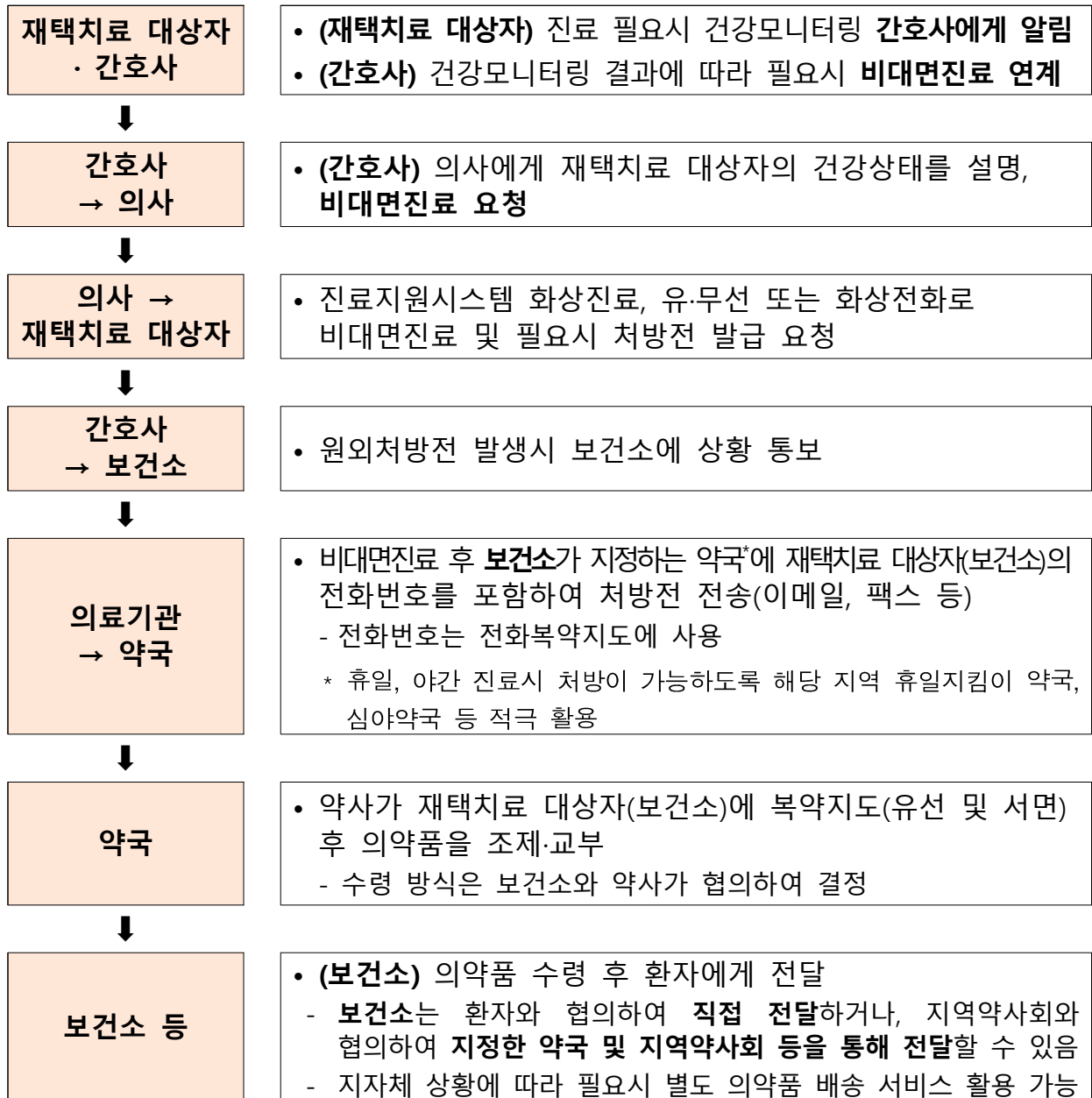
☞ <참고 8> 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대리처방 허용방안

<단기·외래진료센터 활용>

- (대상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요역할) ▲ 외래를 통한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 투약 ▲ 위험요인 발견 등 필요시 입원 또는 전원(생치, 병원) 조치
- (진료절차)
 - (접수) 동선 분리 등을 위해 사전예약제,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에 진료
 - * '관리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전담팀(지자체)으로 외래진료 신청 → 재택치료전담팀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의뢰·예약 → 이송수단 마련
 - (이송) 지자체별 이송체계*를 활용하여 자택⇄의료기관으로 이송
 - * 지자체별 계약된 민간위탁구급차,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 (대면진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료 실시,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입원 또는 전원 추진
 - * (진료중 응급상황시) 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과 119에 통보, 사전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
- ※ (관련근거)①'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안내'(보험급여과-6005,.2021.12.1.)②'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관련 추진사항 보고'(중수본-38562호.2021.12.1.)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지원(비대면진료) 절차>

- 재택치료 대상자 코로나19 관련 진료 요청 시 또는 건강모니터링 중 **지속적 발열, 호흡곤란, 활력징후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비대면진료 연계
- 비대면진료 후 응급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응급이송체계에 따름
 - **코로나 외 질환**으로 진료처방이 필요한 경우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을 준용 처리



5. 격리관리

○ 재택치료 대상자

① (일반원칙) 격리관리는 10일간 유지(마지막 3일은 자가격리)

- 재택치료 대상자와 **대면** 시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 일회용장갑, 안면보호구,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세트** 착용

② (격리 모니터링)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므로 전담공무원은 유선연락,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 확인**

- (주거지 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 무단이탈자 발생시 처리절차 >

구분	초동보고	종합보고
시점	- 무단이탈 발생 확인* 즉시(실시간) * 영상통화, 현장방문, CCTV 확인 등	- 안심밴드 착용 등 후속조치 완료 후 ※ 18시 이후 현장출동 건 익일보고
내용	[이탈초동보고] 홍OO, 00년생, 시·도, 시·군·구, 적발경로, 9.00. 00시 확인	- 무단이탈자 보고 서식 - 부서장 연락처(핸드폰번호) 병기
전달	전담공무원 → 시·군·구 총괄 → 시·도 총괄 → 행안부	
방식	문자메시지 등 SNS 대화방 활용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활용 -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출력 메뉴 이용

③ (물품지원 및 교육) 재택치료키트, 생필품 등 지원물품 전달, 전담공무원 지정 및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지원*(비대면)

* 앱 최초 연동시 정확한 격리장소로 반드시 위치 보정

**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물품 구성·배송 업무를 외부 위탁(계약)·아웃소싱 가능

○ **공동 격리자(보호자 및 동거인)**

① **(일반원칙) 재택치료자가 8일째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공동 격리자(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해제 가능**

- 공동 격리자(보호자 및 동거인)는 ▲입원요인*이 없어야 하며, ▲재택치료 대상자와 가급적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하여 사용
- ※ 보호자 및 동거인도 격리기간 중에는 필수 외출 허용 시를 제외하고는 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 공동 격리자의 입원요인은 대상자의 입원요인과 같음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

② **(외출 등)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건강모니터링 기간인 첫 7일간은 외출 일부 허용*(아래표)**

-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택치료추진단 담당공무원)에 사전 통보
-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또는 현행법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시설격리 조치)
- 재택치료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8일차(12:00) 부터는 외출 등 일상생활 가능

< (참고)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범위 >

허용 사유	준수 사항	관리 방안
· 본인 진료 · 재택치료자 비대면진료 시 처방된 약 수령	· (외출전) 탈의(환복) 및 손 씻기 · (외출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이동시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폐기물배출시 제외),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외출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 외출사유 발생 시 재택치료추진단에 사전 유선 연락 · 재택치료추진단은 외출사유 검토·승인 및 준수사항 교육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은 공동격리자 외출 중 무단 이탈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외출자는 복귀 후 재택치료추진단에 유선 연락

* 접종 미완료자는 제외

③ (추가격리) 보호자 및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라 추가격리는 면제되나, PCR 검사(본인 소유 자동차 등 이용)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공동 격리자는 재택치료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8일째부터 10일간 추가격리
- 추가격리 기간 증상발현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추가격리 종료 전 PCR 검사(본인 소유 자동차 등 이용)가 필요

* 과거 확진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추가격리 적용

* 단, 보호자 및 동거인이 재택치료자와 동일감염집단의 감염자인 경우 추가 격리 및 격리해제 PCR검사 불필요

<보호자 및 동거인 생활관리·격리해제 관련 조치사항>

구분	화장실 공동사용	외출	추가격리	PCR 검사
예방접종 완료자	불가	일부 허용	면제	2회 ①재택치료자 시작 후 6~7일차 (재택치료자의 건강모니터링 종료시점) ②재택치료 시작 후 13~14일차 (공동격리해제 후 6-7일째)
예방접종 미완료자		불가	필요	2회 ①재택치료자의 격리중 6~7일차 ②본인 추가격리 해제전(9일째)

④ (물품지원 및 교육) 공동 격리자에게 개인보호구세트 등 물품 지원 및 교육, 격리 모니터링

◆ 재택치료 대상자 시스템 활용방안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재택치료 시작, 해제 사실 입력에 활용(통계 활용)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은 코로나19 환자의 병상배정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심평원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접속(hcr.hira.or.kr / (크롬 활용) / 각 기관 인증서는 복사 등으로 공동+동시 사용 가능함

- (시·도 환자관리반) 재택치료 **배정** 사실 입력 관리
- (재택치료추진단) 재택치료 **시작** 및 **해제** 시 상태 입력 관리, 재택치료 중 의료기관 등 전원 시 전원정보 입력(전원기관명, 전원날짜, 전원사유)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시·도) 재택치료 배정 사실 입력,
(시·군·구) 재택치료 시작 – 격리해제(또는 이송) 사실을 입력하여야 함

• **(자가격리 시스템*)** 재택치료 대상자 및 공동 격리자(보호자 등)의 격리관리에 활용

- (재택치료 대상자 및 공동 격리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일 2회** 자가진단 실시(필요 시 안심밴드 착용 및 연결)
- (재택치료추진단)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에 따라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앱”을 활용하여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 격리자 **모니터링**, 격리 종료 시 앱 상태변경 메뉴에서 반드시 ‘**해제**’ 조치
- * 재택치료 대상자의 경우 건강정보의 중복입력 문제 해결을 위해 ‘21.11월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서 자가진단 입력 기능 제외 예정

•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모니터링에 활용

- * 중수본의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활용(중수본 사전협의 필요) 권장하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건강모니터링 시스템도 활용 가능
-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앱을 설치하고 **1일 2회 활력징후**(체온, 혈압/맥박, 산소포화도(만 12세이상), 혈당 등), **임상증상** 입력, **정신건강 자가진단** 총 2회(재택치료 시작일, 시작일+5일) 실시
- (재택치료추진단·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http://hcms.mohw.go.kr/>)에 접속하여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실시하고 참여 의료기관 **비대면진료**(전화상담, 화상통신) 등 활용
- * 모든 활력징후를 입력할 필요 없으며, 재택치료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 판단하에 필요한 건강정보만 입력하도록 안내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입력한 건강기록을 확인하고 **1일 1회 이상은 유선**으로 건강상태 직접 확인
-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 <참고 9>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운영 절차 안내

6. 응급상황 대비

< 기본 원칙 및 주의사항 >

- ①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증상 발현 또는 악화 시 기본적인 의료상담은 재택치료 담당 의료진에게, 응급상황 시에는 즉시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진료지원앱 응급전화에 연락하도록 사전 안내

*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면 비응급 유증상 환자를 '비응급상황'으로 안내하여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위급한 환자는 골든타임 내 응급대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② 지자체 별로 재택치료팀, 관리의료기관, 소방청, 시도 병상배정반, 이송 의료기관 간 **24시간 동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 및 상시운영 필수**

- ③ 지자체별 또는 관리의료기관별 **이송의료기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함**

* 감염병전담병원 및 관리의료기관 응급실 등 우선 활용 지정

* 야간에 이송할 의료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이송체계 마련) 재택치료 활성화시 증가할 대상자 규모, 기존 이송체계, 구급차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재택치료자 안내) 필요시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의료기관(24시간 비상연락망)으로 연락

- (비상연락체계)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가능하도록 보건소(재택치료추진단), 협력의사·의료기관, 시도119 등 비상연락망 구축

※ 지자체 재택치료추진단, 의료기관 모두 24시간 유선 대기 필수

※ 응급 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거나, 의료기관 지정(병상 배정) 후 보건소, 시도119(구급차)에 이송 요청

- (의료기관 지정) 지자체 상황·수요를 고려하여 재택치료자 상태에 따라 이송 가능한 복수의 의료기관 사전 지정·확보

* 병원 연계를 기다릴 수 없는 응급인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으로 지정 권장

- (이송수단 확보) 보건소, 의료기관, 민간 구급차, 119구급대 활용 등으로 충분한 구급차 확보 및 다양한 수단 검토

※ 119는 가능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송 요청

* 지자체별 이송계획에 따라 이송비용 확보 필요

- (전원이 필요한 증상발현) 환자의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 전원
 - (절차) 입원병상 필요시 재택치료추진단은 시·도 병상배정반을 통해 입원 가능 병상 확인 →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 → 신속·적절한 조치 후 필요시 전담병원 입원·치료, 상태 호전시 귀가

* 지자체별 보건소, 119, 민간구급차 현황을 파악하여, 이송 수단 확보 필요

◆ 전원이 필요한 증상

- 일상생활 중 숨가쁨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지속적인 흉통, 식욕부진

- 이송 필요 여부는 재택치료추진단(의사) 또는 증상모니터링을 담당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판단하며 의료기관 이송시,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구급차(보건소, 의료기관, 민간구급차, 119구급차 등)를 활용
- 환자가 이송되는 의료기관/시설에 전달하고자 하는 자료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지퍼백 등에 담아 반드시 동행자가 지참·전달
- (응급상황)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의료진이 응급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119구급대에 응급이송 요청

- 이송 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며, 이송 참여 인원 및 동승하는 보호자 등은 반드시 적절한 보호구(4종 보호구* 등)를 착용

* 마스크(KF94, N95 이상 또는 동급이상),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 초응급의 경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출발시 인근 병원에 사전 연락)

◆ 소아환자 위험 증상

- 호흡이 빨라지며 연령대비 정상 호흡수를 벗어날 때
- 흉곽함몰이 관찰될 때
-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코 별령임(nasal flaring))가 있을 때
- 무호흡 또는 청색증
- 의식변화, 처짐 또는 경련
- 뚜렷한 음식 섭취 불량, 수유 곤란, 탈수

* 연령별 정상 호흡 수

연령	0~<3개월	3~<12개월	1~4세	5~12세	>12세
호흡수/분	30~60	25~50	20~40	20~30	12~16

- 3개월 미만 소아의 발열(동반 세균감염(균혈증 등) 가능성 고려)
- 정상 산소 포화도(95%) 미만으로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 성인의 위험 증상 : 호흡곤란, 가슴압박감, 의식저하, 혼돈, 청색증 등

☞ <참고 10> 응급 상황 시 대응방안 흐름도

- (응급이송) 사전에 이송 의료기관 지정 및 이송수단을 확보하여 응급시 병상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담병원으로 이송

* 재택치료추진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조치

- 대상자·병원 정보 실시간 공유(재택치료추진단, 소방청, 의료기관, 병상배정반 등), 핫라인을 구축하여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 후 이송 및 현장조치

※ (지자체)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상태(환자중증도, 진료시급성, 대면 진료 필요성 등)에 따라 인근 지역 의료기관에 배정

○ (이송 의료기관)

- ①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증상이 발생하거나 입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 ② (거점전담병원/중증환자전담병상 등)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 또는 중환자 발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③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 이상 징후 등이 발생하여 1~3일 정도 집중 진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 일반 생활치료센터에서도 X-ray, 시설 내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 ④ (응급의료기관) 생명이 위급한 긴급상황에서는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로 이송

< 참고. 비응급 상황 시 이송수단, 준수사항 및 관리방안 >

이송수단	준수사항	관리방안
· 방역택시 등 지자체 관리 이송수단 · 개인차량	· 운전자는 접종완료한 방역택시 기사 또는 보호자·공동격리자 (운전시 창문개방) · 구급차 이송 시와 동일한 동선 활용 권장 · 백신접종자 운전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야 함	· 재택치료추진단(의사) 또는 관리의료기관은 비응급 이송 가능 여부 판단 · 재택치료추진단은 배정 의료기관(시설)에 동선 확인, 재택치료자에 이송수단 및 이송 의사 확인 및 수칙 및 동선 교육 · 격리 관리 전담공무원은 환자 이동 중 무단 이탈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재택치료추진단은 환자 의료기관(시설) 입·퇴원(소) 또는 자택 복귀 여부 확인

7. 재택치료비 지원

- (지원목적) 재택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격리통지서를 받아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해제 날*까지, 코로나19 관련 치료비 지원,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나 격리해제 후 제공되는 치료는 미지원

* 코로나19 대응 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사전통지) 격리통지서 수령중에 『격리조치 위반 시 재택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서식 3> 격리통지서 수령증

- (비용지급) 의료기관장 및 약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분은 보건소****에 비용청구

☞ <부록>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참조

- * (청구방법)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073(2021.10.8.)),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213(2021.10.18.))’,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보험급여과-6005(2021.12.1.)) 등을 참고하여 청구

※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수가)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관(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보건소)은 추후 안내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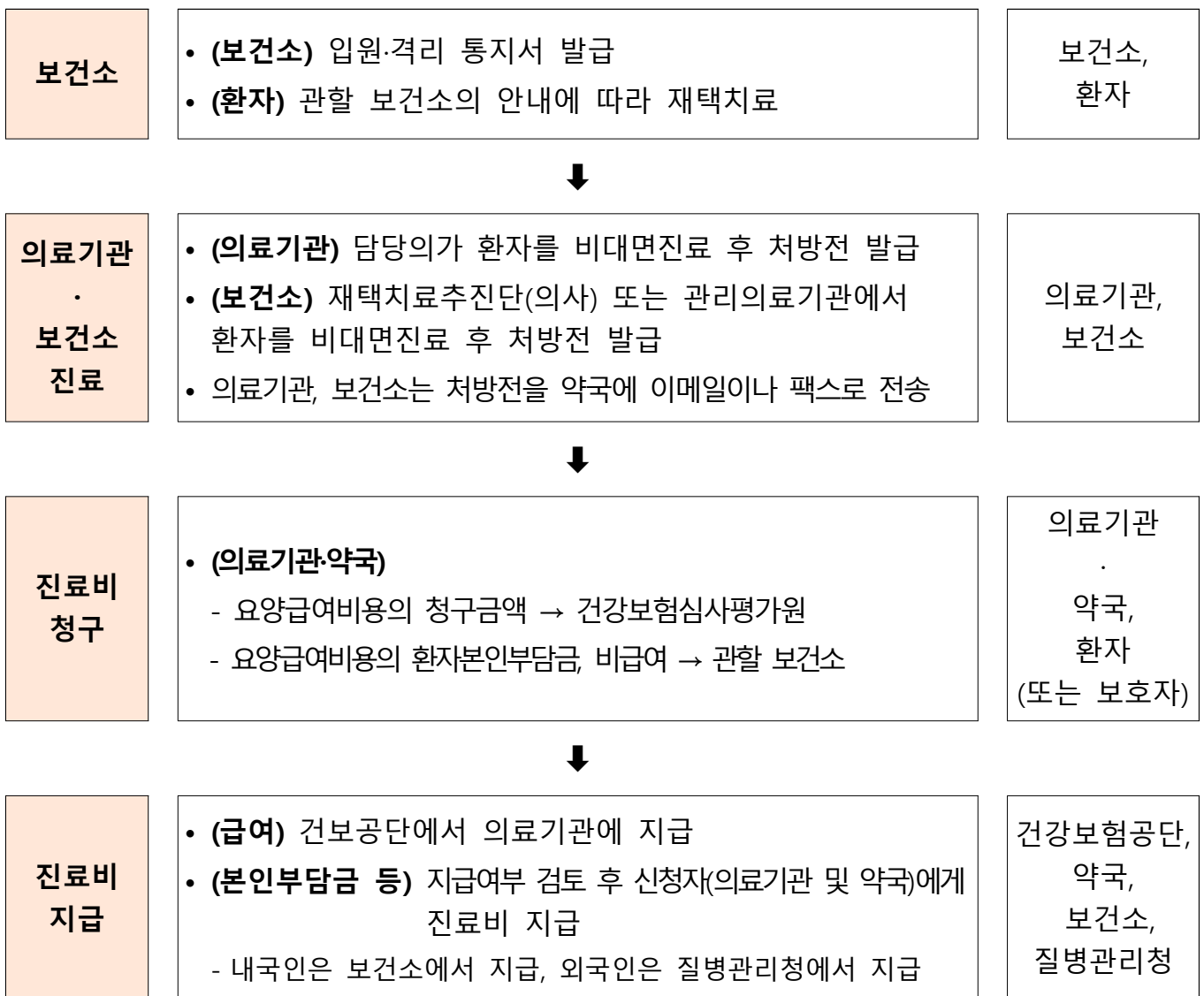
* 본인부담금(법정외래본인부담률)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임

- ** (청구방법) < 서식 9 >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또는 팩스로 청구

- 보건소(또는 시·도)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하는 재택치료자의 환자본인부담금은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자체(또는 질병청)에서 지급함

※ 외국인 진료비용을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여부 확인 후, 의료기관 제출 서류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감염병 발생신고서 제출

<재택치료비 지원 절차>



8. 재택치료 격리해제

- (재택치료 대상자 해제 기준)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재택치료 해제 가능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이 원칙 ☞ <참고 11>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결과 기반의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단,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을 때)

- 재택치료 시작 후 10일(7일의 건강관리+3일의 자가격리)이 경과한 11일째 정오(12:00)에 격리해제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건강관리기간 운영 관련 긴급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39223)

- (건강상태 평가)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재택치료의 건강관리 종료 판단·결정
 - 재택치료 해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검사 기반 기준* 적용, ▲시설 또는 병원 치료로 전환, ▲재택치료 기간 연장 등 가능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해제

- (해제) 관할 보건소장은 재택치료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자(환자)에게 안내
 - (신고)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hcr.hira.or.kr)에 격리해제 정보 입력
 - 공동 재택치료 중인 확진환자*들은 가장 마지막 해제일에 맞춰 일시에 격리해제 또는 본인의 해제일에 거주 장소를 변경하여 격리해제 가능
 - * 보호자도 확진 환자인 경우, 확진 환자인 다른 가족이 불가피하게 공동 재택치료하는 경우 등
 - 재택치료에서 해제된 환자는 기존 보호자와 공동 격리를 지속하거나, 자가격리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와 별도의 장소에서 관리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재택치료 해제 안내 및 보건교육 시행

☞ <참고 12> 격리해제자 안내문(예시)

- 해제시 재택치료키트내의 소독제를 사용하여 격리장소 소독 및 폐기물 처리 방법 안내

☞ <참고 5>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 보호자(공동 격리자)

① (확인) 예방접종완료자인 공동격리자는 재택치료 시작 후 6~7일에 PCR 검사가 음성인 경우, 8일차 정보에 격리해제

- 관할 보건소는 보호자 및 동거인이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를 안내하고, 보호자 및 동거인은 본인 소유 차량 등을 통해 방문하여 검사
- 보호자(공동 격리자)의 코로나19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필요

② (안내 및 해제 후 조치) 보건소는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를 안내하고, 시·도에 격리 해제 보고 및 자가격리시스템에 해제 정보 입력

☞ <서식 10> 격리해제 확인서

③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가 끝나고 자가 격리가 시작되는 날(8일차) 부터 10일간 추가격리

※ 과거 확진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추가격리 적용하나, 보호자 및 동거인이 재택치료자와 동일감염집단의 감염자인 경우 추가 격리 및 격리해제 PCR검사 불필요

<보호자 및 동거인 생활관리·격리해제 관련 조치사항>

구분	추가격리	PCR 검사	
예방접종 완료자	면제	2회	①재택치료자 시작 후 6~7일차 (재택치료자의 건강모니터링 종료시점) ②재택치료 시작 후 13~14일차 (공동격리해제 후 6-7일째)
예방접종 미완료자	필요	2회	①재택치료자의 격리중 6~7일차 ②본인 추가격리 해제전(9일째)

1. 방문자 관리

- 재택치료 대상자 및 공동 격리자 이외의 방문자 출입 금지
- 격리생활 유지를 위해 방문자가 반드시 출입해야 하는 경우(생활 시설 고장 등) 관할 보건소의 확인 후 방문(개인 보호구 4종 착용* 필수)

* 마스크(KF94, N95 이상 또는 동급이상),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2. 생활 관리 ※‘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7판) 및 유급휴가비용(2-6판) 지원사업 안내’ (방대본-27706,2021.12.10.)

- (생활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 대상과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재택치료 시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원

* 재택치료 대상자 및 공동격리자 자택 생활에 따른 식료품비, 주거비 등 생활비용 지원

☞ <참고 13>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지침을 따르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유급휴가비용), 읍·면·동(생활지원비)으로 연락

- (유급휴가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된 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제외

※ 제외대상: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해외입국 격리자(2020.4.1. 0시 이후 입국자)

-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 중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가구 단위 지원

※ 제외대상: 방역수칙미이행자(2021.4.1.이후), 해외입국 격리자(2020.4.1. 0시 이후 입국자),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추가 생활지원비) 실제 입원 또는 격리기간에 따른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 가구원별 추가 지원금 지원

① (지원대상)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인 경우*

*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준용(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생활지원비 대상 아님

② (지원내용) 기존 가구당 생활지원금에 더하여 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지원금 추가 지원(재택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10일분 지급)

* 재택치료 중 전원(병원, 생활치료센터 등)한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 지원

< 가구원 수 별 생활지원비 >

(단위: 원 / 10일 기준 상한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비고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격리대상자
추가 생활지원비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백신접종자에 추가 지원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 월평균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식사비, 주거·수도·광열비 반영(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년)

* 재택치료 10일 기준 상한액으로 치료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일분 범위 내 지급

○ (식료품·생필품 제공) 재택치료 기간 동안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물품* 지원

* 소독용 티슈 등 방역물품, 연령에 적합한 식료품, 격리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품 등

○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여, 치료자에게 배출 안내

☞ <참고 5>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 소독하고 배출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

서식 1

재택치료 대상 분류 시의 추가 질문지 및 환자 상태 기록지

□ 입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조사자	관할시도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보건소 이송 담당자	성명	
	조사보건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조사자성명		조사일	_____년____월____일		

작성일		확진일		증상발현일	
성명		나이		성별	
지역		주민번호		분류번호	
항목	세부사항			예	아니요
현재 증상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				
	호흡곤란* * 일상생활 중에도 숨이 참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호소 (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만 12세 이하의 경우 청색증, 흉곽함몰, 코벨링이(flaring) 등)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위험 요인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에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학적 이상 등)				
재택치료 제외 대상자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쉼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소아 · 장애 · 70세 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 의향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임상 실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될 수 있음		
비 고 (특이사항)	※ 그 외 확인한 추가 사항에 대해 역학조사관 또는 병상 배정반에서 작성		

○ 항목정의서

항 목	설 명												
작성일	시·군·구에서 입원/생활치료센터 선별을 위한 추가질문지를 작성하는 날짜												
확진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된 날짜												
증상발현일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날짜												
성명	환자의 성명으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나이	환자의 나이												
성별	환자의 생물학적 성별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성별												
지역	환자의 실거주지(시·도 단위)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												
분류번호	각 시·군·구 혹은 질병관리청에서 부여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일련번호												
의식장애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 주관적 호소 및 객관적 관찰 포함)												
호흡곤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숨이 참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호소(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만 12세 이하의 경우 청색증, 흉곽함몰, 코별령이(flaring) 등) ※ 참고: 연령별 정상 호흡수 <table><tr><td>연령</td><td>0~<3개월</td><td>3~<12개월</td><td>1~4세</td><td>5~12세</td><td>>12세</td></tr><tr><td>호흡수/분</td><td>30~60</td><td>25~50</td><td>20~40</td><td>20~30</td><td>12~16</td></tr></table>	연령	0~<3개월	3~<12개월	1~4세	5~12세	>12세	호흡수/분	30~60	25~50	20~40	20~30	12~16
연령	0~<3개월	3~<12개월	1~4세	5~12세	>12세								
호흡수/분	30~60	25~50	20~40	20~30	12~16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난 이후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0℃ 이상의 발열 또는 이에 준하여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열감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 의사에 의해 진단된 1형 혹은 2형 당뇨병으로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코로나19 확진 이전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던 환자												
만성폐질환, 천식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 의사에 의해 진단된 만성폐질환(폐기종 등),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 의사에 의해 진단된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혹은 이에 준하는 심혈관 질환												

항 목	설 명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확진 당시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와상환자	코로나19 관련 증상과 관계없이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지내는 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 질환자	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 의사에 의해 진단된 조현병,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자로,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코로나19 확진 이전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자로,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 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에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학적 이상 등)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참여 의향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임상 실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될 수 있음

□ 재택치료 대상자 상태 기록지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자 :

성 명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격리지)				연락처	본 인
					보호자
검사 정보	확 진 일				
	확진 시 증상	☐ 발열 ☐ 기침 ☐ 호흡곤란 ☐ 오한 ☐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후각·미각손실 ☐ 피로 ☐ 식욕감소 ☐ 가래 ☐ 오심 ☐ 구토 ☐ 설사 ☐ 어지러움 ☐ 콧물·코막힘 ☐ 기타 ()			
	증상 시작일				
임상 정보	기저질환 여부	☐ 예 ☐ 아니오			
	기저질환명				
	약 복용 여부 (최근 24시간 이내)	☐ 예 ☐ 아니오			
	약명				
의료 기관 사전 검토 의견	의사(의료기관)				
	재택치료 적합 여부	☐ 적합 ☐ 부적합			
	부적합 시 사유				
	재배정 요청 여부	☐ 예 ☐ 아니오			

입원 · 격리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12. 30.>

[] 입원 · [] 격리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입원·격리 사유			
입원·격리 내용	입원일·격리시행일		
	입원기간·격리기간		
	입원·격리 장소	[] 병원·의원() [] 자택 [] 시설()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년 월 일 시

수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사항

- ①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민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②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으로 연결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③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시설이용 비용 자부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④ 본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②·③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7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식 4

재택치료 환자 관리 대장[예시]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증상 발현일	재택치료 장소	중증도 분류	재택치료 시작일	재택치료 해제일	재택치료 시작 사유	해제 검사일	재택치료 후 해제 현황
	XXX	남		발열, 인후통 (2020.6.7)	자택(XX동 XX아파트 000-000호)	경증	6.15	6.24	진단 후 시작	미시행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000	여		-	자택(00동 00아파트 XXX-XXX호)	무증상	6.18		XX 생활치료센터 에서 퇴원		

서식 5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정신청·변경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신청·변경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기관종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면허번호		생년월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
1) 1일 2회 건강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2)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3) 유증상 지속 등 전원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취침 전 1회 이상 추가 전화 확인 등 실제 전원 전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4) 이상 징후 발견 시 영상통화로 안부를 즉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이 가능합니다.					
5) 야간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 (첨부) 서식 5-1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현황 및 운영 계획서 및 서식 5-2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참여인력별 세부현황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현황 및 운영 계획서				
의료기관명			요양기호	
일반현황 ¹⁾	기관 유형	☐ 감염병전담병원 ☐ 국민안심병원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선별진료소 운영경험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 기타		
	특수병상 운영 여부	☐ 응급실 ☐ 중환자실		
	재택치료 운영장소 지정 여부	☐ 지정 ☐ 미지정		
참여 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참여인력 ²⁾	의사	간호사	기타 모니터링 인력	행정인력
	()명	()명	()명	()명
		전담 ()명 비전담 ()명	직종1 ()명 직종2 ()명	
인력운영 계획 ³⁾				
이송계획 ⁴⁾				
작성자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 작성요령 1) 해당란에 √ 표시 2) 재택치료 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기재, 참여인력별 세부현황은 서식5-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 3) 24시간 대응 가능한 인력 운영계획을 반드시 작성 4) 비상연락망,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계획, 이송의료기관 확보 여부 및 이송의료기관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5-2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참여인력별 세부현황

☐ 의사

의사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면허번호	자격종별	적용시작일자	적용종료일자
봉직의사	111111-1*****	홍길동	11111	내과	2021-10-25	9999-12-31

☐ 간호사 등 모니터링 인력

인력구분	전담/비전담	주민등록번호	성명	면허번호	면허취득일자	적용시작일자	적용종료일자
간호사	전담	111111-2*****	홍길동	111111	2018-03-18	2021-10-25	9999-12-31

지정번호
제 호

재택치료협력의사 지정서

소속 의료기관명(요양기호) :

성 명 : (면허번호 :)

생년월일 :

지정일 : . . . 부터

위 기관을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의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지정번호
제 호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정서

의료기관명(요양기호) :

주 소 :

지정일 : . . . 부터

위 기관을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1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영양급여 적용 (신규·변경)신청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영양급여 적용 (신규·변경)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주소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 국·공립 ☐ 의료법인 ☐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인 ☐ 개인 ☐ 기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적용		시작일	년 월 일
		종료일 ¹⁾	년 월 일
요양기관 운영 현황			
운영 형태	☐ 단독 지원		☐ 대표 기관 ²⁾ (다수 지원)
인력 ³⁾	직종	대표기관 인력	연합기관 인력
	의사	()명	()명
	간호사	()명	()명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치료환자관리 영양급여 적용기관 참여(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 작성요령(의료기관 기준으로 작성) 1) 종료일 : 신청일 기준으로 종료일은 9999년 12월31일로 기재 2) 대표 기관: 다수의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지원하는 경우 대표기관 1개소에서 신청 3) 인력: 신청일 기준으로 인력 수를 기재 4)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적용일자 변경 및 종료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			

2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요양기관 리스트

※ 시도·시군구 지자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에 문서 통보시 활용

[illegible]

3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규·변경)신청서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규·변경)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 국·공립 ☐ 의료법인 ☐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인 ☐ 개인 ☐ 기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적용		시작일	년	월	일
		종료일 ¹⁾	년	월	일
요양기관 운영 현황					
운영 형태	☐ 단독 지원		☐ 대표 기관 ²⁾ (다수 지원)		
인력 ³⁾	직종	대표기관 인력		연합기관 인력	
	의사	()명		()명	
	간호사	()명		()명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참여(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작성일자 (모두 작성)	성명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 직책 :			작성일자	
※ 작성요령(의료기관 기준으로 작성) 1) 종료일 : 신청일 기준으로 종료일은 9999년12월31일로 기재 2) 대표 기관: 다수의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대표기관 1개소에서 신청 3) 인력: 신청일 기준으로 인력 수를 기재 4) 전용생활치료센터 적용일자 변경 및 종료시 즉시 지자체에 변경 신고 하여야 함					

4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영양기관 리스트

※ 시도·시군구 지자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에 문서 통보시 활용

연번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전용생활치료센터 명칭

※ 작성예시

○ 1개의 요양기관에서 2개 이상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운영지원하는 경우

연번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전용생활치료센터 명칭
예시1	23456789	라마바병원	2022-01-01	9999-12-31	가다연수원(20220101~99991231)/ 다락기숙사(20220201~99991231)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주소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¹⁾		
	주소		
격리입원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입원 · 진료비	본인 부담금	원	

「김영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²⁾

공통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가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 로 같음 가능 * 격리입원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와 구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 로 같음할 수 있음	□ □ □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 □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1 「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임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서식 9-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서식>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

약국(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약국)	약국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자가치료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약제(원외) 처방비	본인 부담금	원
	비급여(외국인의 경우)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4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약제(원외처방)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²⁾

공통서류	1.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2. 자가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처방전 내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문구 명시되어야 함 **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미기재는 비지원 대상임	☐
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 · 국제1 생활치료센터 (Example: Home, °° Medical Center, 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etc.)		
격리시작일 ISOLATION START DATE		격리해제일 ISOLATION END DATE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onfirm that the above-identified person has been 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releasing COVID-19 case-patients from isolation.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본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Persons who are discharged/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OVID-19 isolation release criteria no longer pose a risk for transmission to others. This document may be accepted in lieu of proof of negative PCR test result.			
발행일: (예시) 20 .°°.°° △△ 보건소장 (인)			

서식 11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 신청서

항목		내용	비고
전담팀명		예) 00구 재택치료센터	시도 담당부서에서 가이드 제공
지역(시·도명)		예) 00시 00구	
주 소		예) 00시 00구 00동 000로00	
연계 의료기관 (요양기관번호)		예) 00병원(11223344)	
대표 전화번호		예) 00-000-000	
응급 전화번호		응급전화번호(필수) 관리자가 수정 가능	환자가 응급 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관리자*	계정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부여	미작성
	이름	000	
	연락처	예) 010-0000-0000	직통번호 또는 휴대 번호
비 고		개소 희망일 : 2021년 00월 00일	평일 기준 최소 1일 전까지 접수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연락처	시스템관리자 등록	시스템 운영 종료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계정 등록 등 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귀중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이용자 본인확인 및 사용자계정 관리, 접근권한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나.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및 제88조(벌칙)

다. 감염병예방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및 제78조(벌칙)

라.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등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장 귀하

서식 13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 [예시]

소 속 기 관 명			
이 름		직 위 (직 급)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사용자(희망)계정	① 영문, 숫자 조합 4자 이상		② 영문, 숫자 조합 4자 이상
이 용 권 한	☐ 의사 ☐ 간호사 ☐ 행정		

위와 같이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사용자 계정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1부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용자계정, 이름, 연락처, 소속기관명, 직위(직급)	시스템 사용자 등록	시스템 운영종료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담팀장 또는 ○○○ 운영단장 귀하

[붙임]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예시]

본인 은(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이하 '진료지원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진료지원시스템의 제 규칙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진료지원시스템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감염병예방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등에 따라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 및 의료, 조산 또는 간호 등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제공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진료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및 보안업무 규칙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3. 재직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진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사전에 진료지원시스템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4. 진료지원시스템 내의 시스템 사용자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진료지원시스템 관리자가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진료지원시스템 사용 허가가 종료된 후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 (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CD, USB, 동영상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종료함을 서약한다.
7. 진료지원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연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속	성명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신청·변경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기관종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면허번호		생년월일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
1) 일반 환자와 확진자와 동선분리가 가능합니다.						
2) 음압격리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입니다.						
3) 응급 상황시 전원 등을 위한 지자체 재택관리팀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4) 외래진료시 입원이 필요할 경우, 입원 가능한 여유병상을 확보 가능합니다.						
※ (첨부)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현황 및 운영 계획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시·도 여건에 따라 서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서식 15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현황 및 운영 계획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현황 및 운영 계획서				
의료기관명			요양기호	
일반현황 ¹⁾	기관 유형	☐ 감염병전담병원 ☐ 국민안심병원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산별진료소 운영경험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 기타		
	특수병상 운영 여부	☐ 응급실 ☐ 중환자실		
참여 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참여인력 ²⁾	의사	간호사	기타 인력	행정인력
	()명	()명	()명	()명
		전담 ()명 비전담 ()명	직종1 ()명 직종2 ()명	
이송계획 ²⁾				
작성자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 작성요령 1) 해당란에 √ 표시 2)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 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기재 3) 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연락체계 등 이송이 필요할 경우, 대응계획 작성				

지정번호
제 호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서

기관명(요양기호) :

주 소 :

지정일 : . . . 부터

위 기관을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요양기관 목록

※ 지자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에 문서 통보 등에 활용

[illegible]

참고 1

재택치료 근거 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및 시설치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2. 자가치료

가. 자가치료의 방법

- 1) 자가치료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장애인·영유아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
- 2)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 5) 자가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자가치료 절차 등

- 1)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감염병환자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2)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 3)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자가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치료를 해제해야 한다.

◆ 재택치료자 및 보호자·공동 격리자가 격리거부 등 이탈을 시도하는 경우

※ 현장 출동 시 최소 2인(예방접종완료자) 1조 편성 필요, 보건부서와 격리관리반이 함께 출동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
- (직원 1) 경찰과 공조하여 현장 확인 → 안심밴드 착용 등의 동의 여부 확인 →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 (직원 2) 직원 1의 현장대응을 보조하며, 현장출동자의 개인보호구 4종 착의 도움 및 탈의 후 처리 등 담당

※ 위 사항 외 재택치료자 및 보호자·공동 격리자의 무단이탈 관련 사항은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 무단 이탈자 관리"를 따름

◆ 현장 출동 시 준비물

※ 보건부서에서 준비·공급

- 개인보호구 세트*, 손소독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폐기물 처리용 소독액
 - * (개인보호구 세트) 재택치료자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4종 세트에 준하여, KF94마스크 · 안면보호구 · 일회용 장갑 · 일회용 방수가운 준비
 -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

◆ 현장 출동 시 준비물 사용 순서

※ 보호복(개인보호구 세트) 착의 → (대면) 업무처리 → 보호복 탈의 → 폐기물 처리

- (보호복 착의) 손 위생(손소독제) → 가운 입기 → 마스크 쓰기 → 안면보호구 쓰기 → 장갑 끼기(옷소매 덮음)
- (보호복 탈의) 장갑 벗기 → 손 위생(손소독제) → 가운 벗기(재택치료자 접촉 부위를 안쪽으로 말면서) → 손 위생(손소독제) → 안면보호대 벗기(앞면 손대지 않기) → 손 위생(손소독제) → 마스크 벗기 → 손 위생(손소독제)
-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내부 1차 소독(소독액) → 탈의품목 넣기 → 내부 2차 소독(소독액) →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묶기 →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기 → 용기 내부 소독(소독액) → 뚜껑 닫기 → 용기 외부 전체 소독(소독액) → 의료폐기물로 처리

재택치료자용 생활안내문[예시]

※ 재택치료추진단 담당자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담당 의료진 전화번호를 기억하세요. 언제 어떤 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지만 알면 스스로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

- 재택치료 기간 중에는 절대 외출을 하지 말아 주세요.
-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택에만 계세요.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때는 반드시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세요.

2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 방에 혼자 있도록 하세요.
- 방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쓰세요. 2미터 이상 가족과 떨어져 있으세요.
- 다시 모두 모이기 위해 식사는 치료기간 동안 혼자 드세요.
-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으세요.
- 밥그릇, 수건, 침대, 컴퓨터는 따로 쓰세요.
- 가족 모두 알콜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하세요.

3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불안해하지 않기 :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집에서 잘 쉬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낫습니다.
- 가장 좋은 치료법 : 잘 쉬기, 물 많이 마시기, 아프면 진통제 먹기
-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 충분히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샤워하기, 자주 크게 숨을 쉬고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기, 술 마시지 않기
- 마음은 가까이 :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기

4 이럴 때는 재택치료 의료진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환자가 발열, 기침,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
- 아픈데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실 때
- 더 심해지는지 잘 살펴보고, 기다려도 아래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

√ 발열, 오한, 기침, 목이 따가움, 코막힘, 콧물, 근육통, 두통, 피곤함
√ 맛을 못 느끼거나, 냄새를 맡지 못함
√ 메스껍고 토함, 설사

5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말고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진료지원앱 응급전화에 연락하세요!

- 본인이나 확진된 가족이 상태가 나빠지는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 본인이나 가족의 상태가 자꾸 나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
① 먼저, 숨이 얼마나 찬지 확인하고 손가락 산소 측정기로 재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더라도 움직일 때 숨이 차다면 바로 재보세요.
- ☞ 94%보다 낮게 나오면 빨리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진료지원앱 응급 전화에 연락하세요.
- ② 숨이 차지 않아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 아래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빨리 연락하세요.

√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참, 혈떡거림.
√ 나아지지 않고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함
√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할 때
√ 깨워 놓아도 자꾸 자려고 할 때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할 때

☞ 비상상황으로 119에 먼저 연락하시게 되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꼭 밝히세요.

6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지 말아 주세요.
- (일반쓰레기) ①소독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 ②재택치료 종료 후에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 소독하고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①소독 후 분리 보관 ②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 (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

성인 재택치료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안)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에 대하여 ‘재택치료’ 하는 성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고, 귀하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금지합니다.
 - 또한, 재택치료 장소에 모든 외부인(가족, 친구 포함) 방문을 금지합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세요.
 - ※ 지정된 재택치료 장소에서의 무단이탈 또는 격리중 타인 접촉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치료(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거나(또는 안심밴드 적용 가능)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달 음식 또는 물품을 수령할 경우, 문 앞에 놓도록 하여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 또는 안내받는 24시간 비상연락망으로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폐기물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 일반쓰레기는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소독하고 배출하면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소독 후 분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 지급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자가 건강확인 준수사항]

- 재택치료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격리해제 시까지 본인의 발열 여부 등 증상을 관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 건강확인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재택치료 건강관리 전담팀이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체온과 발생 증상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코로나19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 그 외에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시행 전 주의사항 안내

- 공동격리 시 확진자로부터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
- 보호자 1인 외 불가피하게 공동 격리자 발생시 공동 격리자도 자가격리자에 준해서 조치
- 공동 격리자는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밀접접촉자에 준해 추가 10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시와 본인의 격리해제시 등 2회 검사 실시
- 1일 2~3회 유선 등으로 건강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함에 협조하며, 증상 발현 시 담당 의료진에게 즉시 연락
- 의료진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로 제공할 경우에는 추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진료기록부 등 정보수집 안내(필요시)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재택치료 가능 여부 판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진료기록부 등을 조화·수집할 수 있습니다.
- 수집한 정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해당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보호자)은 상기 안내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자: _____ (서명)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 또는 안내 받는 24시간 비상연락망으로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 안내서는 대상자(보호자) 및 보건소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소아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안내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걸렸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기지 않도록 가능한 혼자 지내야 해요. 불편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분간 집안이나 방 안에서 지내며 몸이 아픈지 관찰하고 씩씩하게 지내는 것에 가족은 물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일들

- 혹시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 여러분을 돌봐주는 정해진 어른 1명 외에는 혼자 있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집 안에서도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해요.
 - 방문은 닫고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해요. 식사할 때는 씩씩하게 혼자서 먹어야 하고, 혼자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른이 도와주실 거예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요.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잘 닦고 난 후 다른 가족들이 써야 해요.
- 병원에 가거나 집 밖에 꼭 나가야 할 때는 어른들이 보건소에 연락하고 나서 외출하게 됩니다.
- 가족들과 예전보다는 말도 적게 하는 게 좋고, 보보나 안아주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병이 다른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을 하거나 안 예뻐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가족들, 돌봐주시는 분들과 말을 하거나 잠깐 봐야 될 때는 전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만나야 해요. 서로 팔을 내밀어도 안 닿는 정도로요. 이때 여러분도 가족들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
- 여러분이 쓰는 그릇, 수건, 휴대전화 등은 다른 가족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혼자만 써야 합니다.
옷이랑 이불도 어른들이 여러분 것만 따로 깨끗하게 빨아 주시고, 그릇도 깨끗하게 따로 잘 씻어주실 거예요.
-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해요. 밥 먹기 전,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
 -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해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동안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해서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 집에 있는 동안 아픈 곳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해요.

- 아픈 곳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열이 있는지 체온을 잴 거고,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기침, 콧물, 숨이 차거나 다른 아픈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른들에게 얘기하세요.
- 아프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열이 나고, 기침이 나와요. 숨 쉬는 게 힘들어 질 수도 있어요. 몸이 떨리거나 아플 수도 있고, 머리나 목이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냄새를 못 맡거나 예전에 알던 음식 맛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영·유아 및 소아 자가격리(치료)자를 돌보는 보호자 안내문(안)

<중앙방역대책본부 · 대한소아감염학회>

영·유아/소아 자가격리(치료)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개인위생 관리]

-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보호를 위해 가능한 보호자(1인)를 지정하고, 그 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공동 격리 가족은 최대한 자가격리(치료)중인 아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공동 격리 대상 제외입니다.
 -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자가격리(치료)중인 아이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올바른 손위생 방법에 따라 손씻기를 시행합니다.
 - 특히, 다음의 경우 반드시 손씻기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와 접촉 전·후, 아이 주변의 물품이나 가구 등을 접촉한 후,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즉시 손씻기
- 아이의 구토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추가적으로 일회성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과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치료)자의 식기류 등은 세척도 별도로 분리해서 합니다.
- **확진된 영유아 및 소아의 목욕**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
 - 아이가 목욕한 공간은 알코올(70% 에탄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1,000 ppm 권장)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 **자가격리(치료) 중인 아이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하여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 **격리된 아이에 대한 마음건강지침**
 - 격리 중인 아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격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격리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무섭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기분이나 걱정을 표현하게 도와주세요.
 - 격리 조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정확 하면서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이나 친구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심한 불안, 짜증, 행동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정신건강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유 및 이유식관리]

○ 확진된 영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 엄마도 코로나19 확진환자라면 직접 수유 가능합니다.
- 수유하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을 권장하나, 직접 수유를 해야 한다면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 개인보호구: 마스크(KF94 등급 또는 그 이상), 눈(안면) 보호구,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비닐 앞가리개)을 권장합니다.
- 수유를 할 때 손위생을 철저히 지켜도록 합니다.

○ 분유수유 및 이유식

- 분유는 젖병에 들어 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회용이 아닌 일반 젖병을 사용할 경우, 젖병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합니다.
-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합니다.
- 식기류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일회용이 아닌 식기류를 사용할 경우, 아이가 사용한 식기류는 따로 모아서 세정제와 온수로 세척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소독 및 환경관리]

○ 자가격리(치료) 중인 아이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아이가 사용 후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등 가정용소독제로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세요.

○ 기저귀 또는 토사물의 관리

-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토사물을 치울 때 손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합니다.
- 아이가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일반쓰레기는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소독 후 분리 보관합니다.
- 재택치료 종료 후 일반쓰레기는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소독하여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하여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배변기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쓰지 말고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

○ 장난감 관리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난감 표면에 수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어 아이의 격리 기간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아이 이외의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사용한 장난감은 격리해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입증된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 사용합니다. 가정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 폐기물 관리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 일반쓰레기는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소독하고 배출하면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소독 후 분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 지급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하거나 치료 종료 후 3일 후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폐기를 하면 됩니다.

■ 격리기간동안 재택치료 전담팀이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아이가 환자와 **접촉 후 1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또는 **아이가 확진된 후 격리해제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상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증상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 재택치료 건강관리 전담팀이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체온과 발생 증상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권태감, 인후통,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 **재택치료 시행 전 주의사항 안내**

- 공동격리 시 확진자로부터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
- 보호자 1인 외 불가피하게 공동 격리자 발생시 공동 격리자도 자가격리자에 준해서 조치
- 공동 격리자는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밀접접촉자에 준해 추가 10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시와 본인의 격리해제시 등 2회 검사 실시
- 1일 2~3회 유선 등으로 건강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함에 협조하며, 증상 발현 시 담당 의료진에게 즉시 연락
- 의료진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로 제공할 경우에는 추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진료기록부 등 정보수집 안내(필요시)**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재택치료 가능 여부 판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진료기록부 등을 조회·수집할 수 있습니다.
- 수집한 정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해당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보호자)은 상기 안내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자: _____ (서명)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 또는 안내 받는 24시간 비상연락망으로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 안내서는 대상자(보호자) 및 보건소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홈페이지) 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조

(소독제 희석액 준비, 개인보호구 착탈의, 손소독 방법, 환자이용공간 소독방법 등 참조)

접속 정보 및 로그인

▶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

① <https://hcr.hira.or.kr>



① URL 접속

②

각 시도/보건소는 각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함.
생활치료센터 개설 시 별도의 인증서를 추가발급해 사용토록 해야 함

환자관리

시도 환자배정

> 시도 환자배정

> 시도 환자관리대장

> 생활치료센터관리

> 통계

> 시도별 환자 관리 현황

> 시군구별 환자 관리 현황

> 격리기관별 확진환자 현황

홈 > 환자관리 > 시도 환자배정

환자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관할 시도 시군구 ☐ 시도변경이력포함

진단상태 처리상태 기관유형 기관기호

· 격리기관 미배정 환자(시도배정 후 5일 경과): · 입원일 미입력 환자(기관배정 후 5일 이상 경과): 30일 이상 격리중인 환자: · 기관 현황 관련 완결이 필요한 환자: (총 109171건)

상태	환자번호	시도 환자관리번호	등록일자	생년월일	환자명	성별	관할 시군구	공통 입력사항	확진일자	진단상태	기관유형	기관기호	기관명	담당자명	담
	00351882	경기도청	Q	2021-10-24	19	18	V 남	경기 평택시	2021-10-23 토		전체				
	00351878	경기도청	Q	2021-10-24	19	0	여	경기 군포시	2021-10-23 토		전체				
	00351868	경기도청	Q	2021-10-24	19	12	여	경기 평택시	2021-10-23 토		전체				
	00351866	경기도청	Q	2021-10-24	19	5	남	경기 파주시	2021-10-22 금		전체				
	00351864	경기도청	Q	2021-10-24	19	7	남	경기 김포시	2021-10-22 금		전체				
	00351863	경기도청	Q	2021-10-24	19	17	여	경기 양평군	2021-10-22 금		전체				
	00351860	경기도청	Q	2021-10-24	19	18	남	경기 안양시 만안구	2021-10-22 금		전체				
	00351859	경기도청	Q	2021-10-24	20	12	남	경기 부천시	2021-10-22 금		전체				
	00351857	경기도청	Q	2021-10-24	19	1	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2021-10-22 금		전체				
	00351856	경기도청	Q	2021-10-24	19	15	여	경기 파주시	2021-10-22 금		전체				
	00351852	경기도청	Q	2021-10-24	19	4	남	경기 양평군	2021-10-23 토		전체				

(시·도) 재택치료자 배정

환자관리

시도 환자배정

> 시도 환자배정

> 시도 환자관리대장

> 생활치료센터관리

< 통계

> 시도별 환자 관리 현황

> 시군구별 환자 관리 현황

> 격리기관별 확진환자 현황

홈 > 환자관리 > 시도 환자배정

⑦ (밖으로 나가서) 저장

환자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관할 시도 전체 시군구 ☐ 시도별경이력포함

진단상태 전체 처리상태 전체 기관유형 전체 기관기호

· 격리기관 미배정 환자(시도배정 후 5일 경과): · 입원일 미입력 환자(기관배정 후 5일이상 경과): 30일 이상 격리중인 환자: · 기관 현황 관련 완결이 필요한 환자: (총 10917건)

상태	환자번호	시도	환자관리반	등록일자	생년월일	환자명	성별	관할 시군구	공통 입력사항	확진일자	진단상태	기관유형	기관기호	기관명	담당자명	담
	00351882	경기도청	Q	2021-10-24	19	8	남	경기 평택시	2021-10-23 토			보건소(자가치료)	31700110	여주시보건소		
	00351878	경기도청	Q	2021-10-24	19	0	여	경기 군포시	2021-10-23 토			전체	Q			
	00351868	경기도청	Q	2021-10-24	19	2	여	경기 평택시	2021-10-23 토			전체	Q			
	00351866	경기도청	Q	2021-10-24	19	5	남	경기 파주시	2021-10-22 금			전체	Q			
	00351864	경기도청	Q	2021-10-24	19	7	남	경기 김포시	2021-10-22 금			전체	Q			
	00351863	경기도청	Q	2021-10-24	19	7	여	경기 양평군	2021-10-22 금			전체	Q			
	00351860	경기도청	Q	2021-10-24	19	8	남	경기 안양시 만안	2021-10-22 금			전체	Q			
	00351859	경기도청	Q	2021-10-24	20	2	남	경기 부천시	2021-10-22 금			전체	Q			
	00351857	경기도청	Q	2021-10-24	19	1	여	경기 안산시 상록	2021-10-22 금			전체	Q			
	00351856	경기도청	Q	2021-10-24	19	5	여	경기 파주시	2021-10-22 금			전체	Q			
	00351852	경기도청	Q	2021-10-24	19	4	남	경기 양평군	2021-10-23 토			전체	Q			

(시·도) 재택치료자 배정

[보건소]환자관리

자가격리 환자관리

자가치료 환자관리

> 자가격리 ① 자가치료 환자관리 선택 > 자가치료 환자관리

> 자가치료 환자관리

> 지역 환자관리대장

> 지역 환자배정

환자번호

환자명

진단상태

현재상태

Q 조회

입원(소)일

2020-10-24 ~ 2021-10-24

입원일 미입력 환자(기관배정 후 5일 이상 경과):

30일 이상 격리중인 환자:

날짜확인이 필요한 환자:

※ 보라색 환자번호, 환자명은 재확인 환자임을 나타냄

격리(관리)환자가 목록에 없는 경우 등 환자 배정 관련 문의는 관할 시도환자관리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기

엑셀 내보내기

저장

연계 현황

입원(입소자가격리현황)

PCR검사 음성 판정

환자 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관할 시군구	기관기호	입원(소)일*	진단 상태*	치료상태	1차	④ 저장
00168067		19	8 여자	경기 수원시	31700501	수원시팔달구보건소				
00220216		20	8 남자	경기 수원시	31700501	수원시팔달구보건소				
00262273		19	7 여자	경기 수원시	31700501	수원시팔달구보건소		경증		
00303560		19	5 여자	경기 수원시	31700501	수원시팔달구보건소				
00313725		19	0 남자	경기 수원시	31700501	수원시팔달구보건소		경증		
00343133		20	8 남자	경기 수원시	31700501	수원시팔달구보건소		경증		
00343311		20	3 여자	경기 수원시	31700501	수원시팔달구보건소		무증상		
00347534		19	9 여자	경기 수원시	31700501	수원시팔달구보건소				
00351882		19	8 남자	경기 평택시	31700501	수원시팔달구보건소	2021-10-24 일			
00097364		20	8 남자	경기 수원시	31700501	수원시팔달구보건소	2021-03-18 목			

② 입원일(재택치료 시작일) 입력

③ 무증상/경증 중 선택

(보건소) 배정받은 재택치료자 관리
자가치료 환자관리 → 입원일 입력 → 무증상/경증 선택 → 저장

[보건소]환자관리

자가격리 환자관리

자가치료 환자관리

재택치료자가 재택 중 격리해제 된 경우

> 자가격리 환자관리

> 자가치료 환자관리

> 지역 환자관리대장

> 지역 환자배정

홈 > [보건소]환자관리 > 자가치료 환자관리

환자번호 환자명 진단상태 현재상태
입원(소)일 2020-10-24 ~ 2021-10-24

입원일 미입력 환자(기관배정 후 5일 이상 경과): 49 30일 이상 격리중인 환자: 0 날짜확인이 필요한 환자: 0

※ 보라색 환자번호, 환자명은 재확인 환자임을 나타냄 격리(관리)환자가 목록에 없는 경우 등 환자 배정 관련 문의는 관할 시도환자관리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기

엑셀 내보내기

저장

연계 현황						퇴원 정보			구분	
환자 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관할 시군구	기관기호	완치일 (격리해제일)	완치유형 (격리해제유형)	사망일		전원일 (자가격리등)
00343588	-	20	1 남자	경기 수원시					전원	격
00343589	-	20	1 남자	경기 수원시				전원	격	
00343622	-	20	8 여자	경기 수원시				전원	격	
00343623	-	19	5 남자	경기 수원시				전원	격	
00344824	-	19	3 여자	경기 수원시				전원	격	
00345538	-	19	5 남자	경기 수원시				전원	격	
00346155	-	20	4 남자	경기 수원시				전원	격	
00346156	-	19	3 여자	경기 수원시				전원	격	
00346521	-	19	2 남자	경기 수원시				전원	격	
00168067	-	19	8 여자	경기 수원시				2021-10-25		

② 완치유형(격리해제유형) 선택

① 완치일(격리해제일) 입력

② 완치유형(격리해제유형) 선택

무증상-임상기준 통과
무증상-PCR검사 통과
유증상-임상기준 통과
유증상-PCR검사 통과
기타(의료진 판단)

(보건소) 배정받은 재택치료자 관리(재택치료자가 재택 중 격리해제 된 경우
격리해제일 입력 → 격리해제 유형 선택 → 저장

건강관리세트(성인용/소아용)	개인보호구세트(성인용/소아용)
①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시럽) ② 산소포화도측정기* ③ 체온계 ④ 손소독제250mL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① 목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매) ② 성인용KF마스크/소아용KF마스크(10매) ③ 페이스섀드(5개) ④ 긴팔가운(10개)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자가진단키트(3개)
공통	
①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② 소독제	

※ 지급 예시

- 확진자 소아 1인 + 비확진 보호자 1인 → 건강관리세트 소아용 1EA + 개인보호구세트 성인용 1EA
- 확진자 청소년 1인 + 확진자 성인 1인 → 건강관리세트 성인용 2EA
- 확진자 성인 1인 → 건강관리세트 성인용 1EA

*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만 12세 이상만 제공

※코로나19 재택치료 자가치료키트 변경 사항 통보(방대본-26946, 2021.12.3.)

건강관리세트

해열제, 동봉된 복용방법을 확인하세요

성인용 해열제

소아용 해열제

성인용 감기약

소아용 감기약



* 의약품은 상기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소독제는 수시로 사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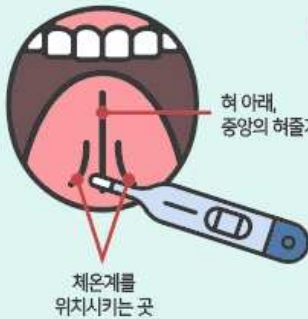
폐기물 소독 시 사용하세요



체온계, 올바르게 측정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체온을 측정하지 않게 되면 체온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① 혀 아래, 즉 혀뿌리 왼쪽이나 오른쪽 한 곳을 정하여 체온계를 위치시킵니다.



② 혀로 체온계를 눌러 입을 다웁니다.



③ 체온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살짝 붙잡습니다.



기초 체온 측정 포인트

-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운 자리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중에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이 아닌 코를 통하여 호흡하십시오.
- 매일 아침, 감온부를 혀 아래쪽, 즉 혀뿌리 근처의 동일한 지점에 체온계를 위치시켜 측정합니다.
- 매일 아침,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측정합니다.
- 체온 측정 후에는 측정된 체온을 기초 체온표에 기록합니다.
- 동봉한 체온계를 사용할 경우 표시창이 위로 향하도록 잡고 혀 밑에 넣어 입을 다문 후 측정해주세요

체온계 방향



표시창이 정면



표시창이 뒷면

산소포화도, 정확히 측정하려면?



검지손가락을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넣고 약 5초간 기다린 후 화면의 숫자를 확인해주세요.



시·도 의료전담팀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측정한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건강상태와 함께 알려주세요.** 보건소 담당자와 모바일앱 직접 입력을 약속하셨다면, **측정결과를 모바일앱에 입력해주세요**

개인보호구세트

안면보호구
(세척용 소독제)

KF마스크

목긴장갑
(손소독제)

긴팔가운



자가검사키트 (COVID-19 Home test)는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사용 하십시오



폐기물 소독 시 사용하세요



자가치료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때 개인보호구를 사진과 같이 착용해 주세요
안면보호구는 세척용 소독제를 사용해 세척해 주세요

1.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 (대상) 비대면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진료 가능
- ◆ (적용 기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 명세서 출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 야간, 공휴, 심야, 토요일,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 한시적 비대면진료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산정 가능
 - *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진찰료의 30%) 가능(환자 본인부담 면제)
 - * 야간, 공휴, 심야, 토요일, 소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 (본인부담금 수납) 코로나19와 직접연관이 없는 진료를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 (처방전 발급) 재택치료 전담팀 또는 의료기관 담당의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

※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

※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대리수령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며,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가능(입법예고안 '대리처방 확인서'에서 변경됨)

3. 주요 질의 답변

○ 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대리처방 관련 질의

Q1. 한시적 비대면진료(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려면 신청이 필요한지?

☞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Q2. 산정 가능한 진찰료는?

☞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 2020.4.14. 진료분부터 적용
- 가-1 외래 환자 진찰료 관련 가산(야간, 공휴, 토요일, 소아 등) 별도 산정 가능
* 2020.4.14. 진료분부터 적용
-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화상담관리료 산정 가능
* 2020.5.8. 진료분부터 적용

☞ 대리처방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

Q3. 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대리처방 관련 본인부담률은?

☞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

Q4. 한시적 비대면진료(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관련 진찰료 청구방법

☞ 명세서 줄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

*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구분	발생단위 구분 ^{주1)}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주2)}
전화상담	2		JX999	전 화 상 담
대리처방	2		JX999	한 시 적 대 리 처 방

주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 기재

주2) 한글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Q5. 한시적 비대면진료(전화상담·처방)는 환자 본인이 의사와 직접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 환자 직접 전화상담이 원칙이나,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장애인, 소아 등)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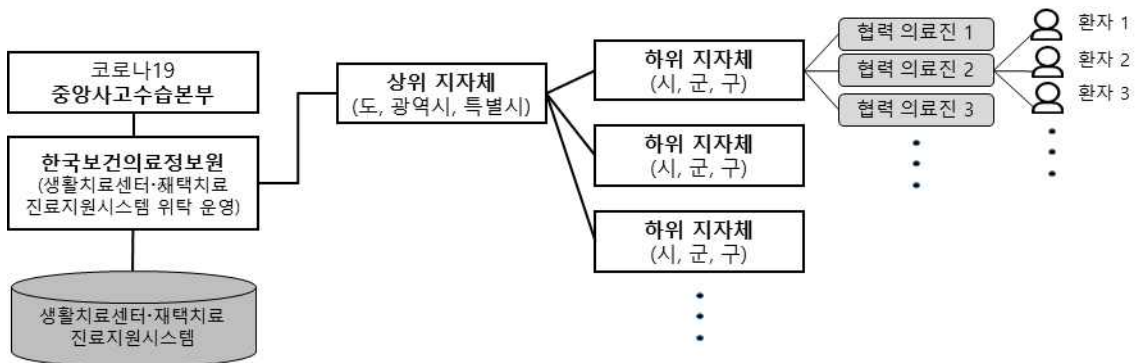
Q6. 전화처방에 따라 약 조제·교부가 가능한 약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심평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공지사항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2020년 1월 기준) 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관련, 지자체 재택치료 시행 시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록 및 운영 절차 안내

□ 시스템 운영 체계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① (시도) 재택치료 담당

- ‘재택치료 담당자’를 지정하고, 진료지원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과 협의
- 시스템 사용이 결정되면, 관할 하위지자체의 ‘시스템 등록신청서’ 및 ‘관리자보안서약서’를 취합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공문 전달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위탁운영 기관(이하 ‘정보원’)

② (시/군/구) 재택치료추진단

- 관할 시군구별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지정 후 ‘시스템 등록신청서’ 및 ‘관리자보안서약서’ (서식 11, 서식 12) 작성하여 시도 담당자에게 전달
- 관내 협력병원 의료진이 시스템(의료진용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 신청서’ (서식 13)를 작성·취합하고, 의료진ID를 시스템에 등록

※ 의료진 사용자 등록시 지자체는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함께 징구 및 보관

- 의료진이 모니터링할 재택치료자(환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환자에게 스마트폰 앱 접속방법 및 사용법 전달

- 재택치료가 종료된 환자는 시스템에서 환자상태 ‘종료’ 처리
- ※ 환자등록 및 환자상태 종료처리는 재택치료 운영 유형(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에 따라 정하여 운영(지자체 담당자 또는 의료기관)

□ 시스템 사용 신청 절차

- ① 재택치료 확대 운영계획(안) 사전 협의(재택치료추진단 → 방대본)
 - * 건강관리를 위한 ‘재택치료추진단’ 구성,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방대본 지침에 맞추어 계획 수립
- ② 시도에서 시스템 등록 일괄 신청*(재택치료추진단 → 시도 재택치료 담당(신청 수합) → 중수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 시스템 등록 신청서(서식 11), 보안서약서(서식 12) 작성, 문서 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
 -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위탁운영 기관(이하 ‘정보원’)
- ③ 재택치료추진단 시스템 등록 및 관리자 계정 안내(정보원 → 시도 재택치료 담당 → 재택치료추진단)
- ④ 시스템 운영 교육(정보원)
 - * 교육수요 조사를 통해 시도 단위로 비대면 교육 실시(필요 시 현장 방문 및 시군구 단위 교육 협의 진행)
- ⑤ 사용자 등록(서식 13 활용) 및 시스템 운영*(재택치료추진단)
 - * 재택치료자 기본문진,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진료 등

□ 시스템 운영 절차

- ① (신규 환자 등록)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재택치료 승인 통보 시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에서 시스템에 신규 환자 등록*
 - * 의료진 시스템(관리자) > 환자관리 > 환자정보 등록
- ② (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 재택치료추진단에서 보호자(환자)에게 재택치료 통지 및 앱 설치* 안내^[참고9-2]

* 환자용 앱 설치 및 사용법 안내 페이지 : <https://hcms.mohw.go.kr/mobile/helper>

③ (건강정보 자가진단) 환자(보호자)는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1일 2회 **활력징후*** 자가측정 → 측정결과와 **임상증상****을 모바일 앱에 입력

*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손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구토, 설사,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기타

④ (환자상태 모니터링) 재택치료추진단 의료인은 환자가 입력한 활력징후와 임상증상을 ‘**환자현황판**’*을 통해 확인

* 의료진 시스템(관리자) > 진료관리 > 환자현황판

- 활력징후 입력값에 이상이 있으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기기를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후 환자에게 재측정 요청**

**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징후 직접 입력도 가능

⑤ (비대면진료) 발열, 호흡곤란, 활력징후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화상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료

⑥ (재택치료 해제) 재택치료추진단은 시스템에 등록된 환자정보 수정*

* 의료진 시스템(관리자) > 환자관리 > 환자정보 수정

□ 환자등록 시 참고사항

○ 거주지번호(병동번호) 생성체계(권고) : “OO[읍|면|동]00-0*”

* 00-0 : 지역 내 재택치료자 발생순번-가족순번

거주지번호	의미	참고
□□동13	□□동 13번째 등록 재택치료자	1인가구
△△읍77-1	△△읍 77번째 등록 재택치료자로 가족 1번	가족

환자정보등록

치료센터	테스트생활치료센터
환자번호	환자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병동 번호 (거주지번호)	"동"항목 사용 금지 예시) 1) □□ 동13 호 2) △△읍 77-1(가족발생순번)
* 성별	☐ 남 ☐ 여

○ 환자(재택치료자) 앱 사용 안내

- 사용법 안내 웹페이지 : <https://hcms.mohw.go.kr/mobile/helper>

- 생성된 계정(거주지번호, 생년월일)은 개별 전달 필요

※ 계정 및 재택치료센터명 정보와 로그인 방법을 환자에게 전달

□ 문의사항 안내 ※진료지원시스템 앱, 웹 사용법 문의에 한함

○ 콜센터 : 1661-8308 (9:00~18:00, 연중무휴)

□ 시스템 개요

- (시스템명)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 (구축목적)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및 재택치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지원
- (접속주소) <http://hcms.mohw.go.kr>(관리자, 의료진)

□ 주요 기능

- 환자는 하루 2회 이상 활력징후(vital sign)를 자가 측정하여 모바일 앱에 측정결과 입력 → 의료인은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화상통신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



- (환자용 모바일 앱) 입소자 기본문진, 활력징후* 자가 측정결과 입력(또는 블루투스 연동), 임상증상 기록, 정신건강 자가진단, 응급전화 기능 등

*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 (의료진용 시스템)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자현황판 및 이상징후 알람, 푸시서비스 및 화상통신 기능 등

* 그 밖에 의료비용(요양급여) 청구 목적 협력병원 EMR시스템 연계 서비스 제공

☐ **건강상태 자가진단 (환자용 모바일 앱)**

<
건강정보기록

체온
body temperature

혈압/맥박수
blood pressure/heart rate

산소포화도
oxygen

혈당
blood sugar

임상증상
symptom

정신건강
mental health

블루투스 기기 연결

날짜(Date)

2021-6-24

측정시간(Time)

오후 05:30:48

체온을 입력해주세요
(Please enter your body temperature)

°C

✓ 기록하기(Submit)

<
건강정보기록

체온
body temperature

혈압/맥박수
blood pressure/heart rate

산소포화도
oxygen

혈당
blood sugar

임상증상
symptom

정신건강
mental health

해당 증상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Please check all the symptoms)

☒ 기침 (cough)	☒ 호흡곤란 (Shortness of breath)
☒ 오한 (Chills)	☒ 근육통 (Muscle pain)
☒ 두통 (Headache)	☒ 인후통 (Sore throat)
☒ 후각/미각손실 (Loss of smell and taste)	☒ 피로 (Fatigue)
☒ 식욕감소 (Decreased appetite)	☒ 가래 (Phlegm)
☒ 구토 (throw up)	☒ 설사 (Diarrhea)
☒ 어지러움 (Whirl)	☒ 콧물/코막힘 (Runny nose and stuffy nose)
☒ 기타 (Other)	

증상을 입력하세요. (Enter other symptoms)

✓ 기록하기(Submit)

□ 환자 건강정보 모니터링 (의료진용 웹)

[illegible]

참고 8-2

진료지원시스템 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안내

□ 환자용 모바일 앱 설치 방법

○ 설치 방법

* 안드로이드폰 :  선택 후 “생활치료센터” 검색 후  앱 설치

* 아이폰 :  선택 후 “생활치료센터” 검색 후  앱 설치

※ 설치 안내 웹 페이지 : <https://hcms.mohw.go.kr/mobile/helper>

○ 로그인 방법

센터 선택	재택치료 > 관할 재택치료추진단 선택
거주지번호	거주지번호는 관할 재택치료추진단에서 부여
비밀번호	생년월일 8자리 (예 : 19990101)

○ 사용 문의 : 1661-8308 (운영 시간 : 평일 및 주말·휴일 09시~18시)

※ 상담원이 통화 중인 경우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상담원이 순차 회신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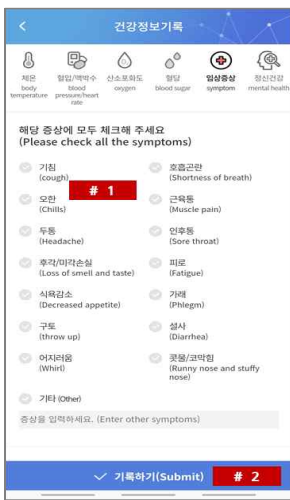


안드로이드 앱 설치



애플 앱 설치

□ 환자용 모바일 앱 주요 기능 사용법

로그인 화면	첫 화면	건강정보기록(활력징후)	건강정보기록(임상증상)
			
① 언어 선택(외국인 환자) ② 재택치료 선택 ③ 현재 거주 지역 선택 ④ 해당 재택치료 센터명 선택 ⑤ 거주지 번호입력 ⑥ 생년월일 8자리 입력 (예시 : 19710101) ※ 거주지 번호는 콜센터 통해서 확인 가능	① 체온, 혈압 등 건강정보를 1일 2회(오전, 오후) 입력 ② 문진 정보 입력(초차 1회만 입력) ③ 입력한 건강정보기록 및 문진 정보 조회 ④ 온라인화상으로 의료진과 1 : 1 비대면진료 ⑤ 건강정보기록 블루투스 연결을 위한 기기 등록 ⑥ 본인에게 전달된 모든 푸시 메시지 정보 조회	① 본인이 측정한 건강정보 (체온, 혈압, 산소포화도 등) 입력 ②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기기가 있는 경우 선택 후 기기 연결 ③ 기록하기 선택하면 입력 정보가 저장됨	① 현재 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모두 체크 ② 기록하기 선택하면 입력 정보가 저장됨

참고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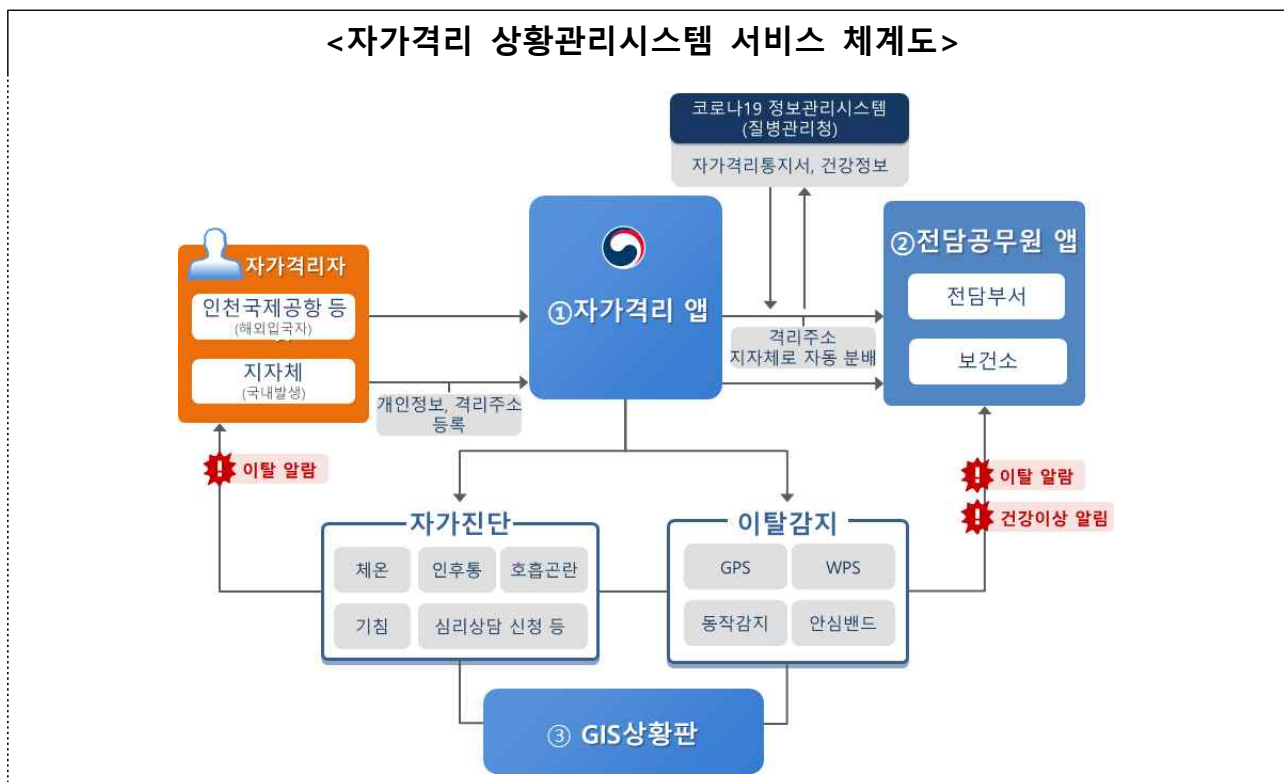
자가격리 상황관리시스템 개요

□ 시스템 개요

- (시스템명) 자가격리 상황관리시스템
- (구축목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지자체 자가격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20.3월~)
 - * 전담공무원 자가격리자 관리인력 및 행정력 경감, 무단이탈 방지
- (시스템 구성) 안전보호 앱(자가격리자용, 전담공무원용) GIS상황판으로 구성

□ 주요 기능

- (안전보호 앱) 자가격리자용, 전담공무원용으로 구성
 - 자가격리자용 앱 : 자가진단, 비상연락망, 안전수칙 등 * 8개 언어로 제공
 - 전담공무원용 앱 : 자가격리자 상세조회, 위치확인, 이탈알림, 동작감지 등
- (GIS상황판) GIS상 이탈 조회, 자가격리자 상세정보 조회, 전담공무원 ID발급, 전담공무원 변경 등 기능 제공



참고 8-4 자가격리앱 설치 안내

□ 자가격리앱 설치 방법

○ 자가격리자용 앱 설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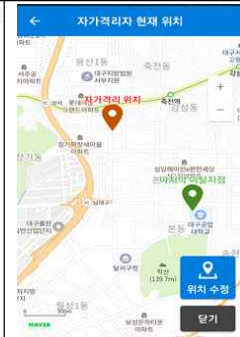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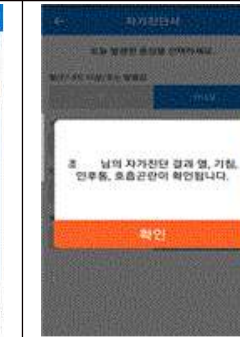
- 안드로이드폰 :  선택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검색 후  앱 설치
- 아이폰 :  선택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검색 후  앱 설치

※ 설치 및 실행 과정에서 전화, 알림, 위치 등 권한 허용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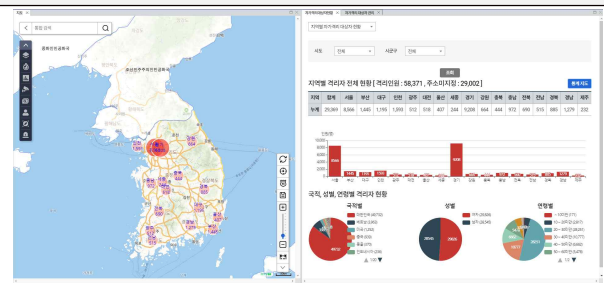
○ 전담공무원용 앱 설치 방법

- 안드로이드폰 :  선택 후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검색 후  앱 설치
- 아이폰 :  선택 후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검색 후  앱 설치

□ 주요 화면

자가격리자 앱		전담공무원 앱		
				
자가진단 화면	격리자 위치정보 화면	격리자 개인정보조회 화면	자가진단결과 이상시 알림화면	격리자 격리장소 이탈 알림화면

GIS상황판 주요화면

	
지자체별 자가격리자 총괄 관리화면	격리자 건강상태 및 위치정보 조회화면

※ '21.11월부터 재택치료자의 경우 “자가격리앱”의 자가진단 기능 제외(비활성화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시스템” 앱으로 연결) 예정

<재택치료자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별 내용>

재택치료 대상자

-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건강관리 담당자)에 알림



재택치료추진단/
의료기관

- 재택치료 대상자의 중증도를 판단하여 응급진료 필요성 및 이송 여부 결정
- 의료기관은 이송 필요시 시도 환자관리반에 우선 요청하고, 보건소 재택치료추진단에 통보



시·도
환자관리반

- 배정 가능한 병상 확인 및 이송 의료기관 지정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중증응급진료센터에 수용 요청 후 구급차 이송 요청
- 병상배정후 재택치료추진단에 배정병상 알림



재택치료추진단

- 보건소 또는 시도 119 등에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요청
- 방역활동 실시



이송
(보건소, 119
구급대 등)

- 배정병상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이송
- 재택치료 대상자의 중증도를 판단, 이송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1.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예시) 무증상 상태로 11.1.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11. 낮 12시 격리해제 가능

(2)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예시) 확진 후 무증상 상태 지속되어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고,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2.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 다만, 증상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확진일 기준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 12시 증상 발생 → 11.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 12시 증상 발생 → 1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위중증: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2)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 12시 증상 발생 → 11.8.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 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 11.1. 12시 증상 발생 → 11.14.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6.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3)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11.1. 12시 증상 발생 하고
- 11.8. 12시 이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11.8. 18시 검체 채취, 11.9.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가 가능

◆ 또한 면역저하자 및 위중증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더라도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관찰이 더 필요하다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 가능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해제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 ◎ 무증상자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 유증상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48시간

<검사 기반 격리해제> - (공통사항)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 ◎ 무증상자이면서,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 유증상자이면서,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습니다.

단, 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PCR 검사는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바이러스 찌꺼기 등)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 의료기관 이용, 직장 및 업무복귀 등이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의 심리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ncmh.go.kr/ncmh/main.do>

-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center.do>

■ 격리해제 후에도 위생수칙,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

※ 귀하께서 격리해제 당일 발열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느껴질 경우 현장 의료진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발열(37.5℃ 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21.3.30.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①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 방역수칙 위반자('21.4.1.이후 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20.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②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 방역수칙 미이행자('21.4.1.이후 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20.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 2)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3) 격리해제일이 2021년인 경우 2021년 지원단가 적용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신설)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21.12.8.)

① 시행: 개정고시 발령 즉시('21.12월 중)

- 다만, 2021.12.8. 현재 재택치료 중인 자부터 소급 적용

② 추가지원 대상 :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인 경우*

*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준용(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 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 대상 및 확인 방법 (참고4))

③ 추가지원 금액 : 기존 가구당 생활지원금에 더하여 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지원금 추가 지원(재택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10일분 지급)

* 재택치료 중 전원(병원, 생활치료센터 등)한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 지원

<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0일 기준 상한액)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추가 지원금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480,000

1)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
 - ☐ 지원제외 대상
 -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사업주
 - ☒ 다음에 해당하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단, 1일 최대 13만원 한도)
 -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참고)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격리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
-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재택치료 환자는 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추가 지원(재택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10일분 지급)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14일 초과자는 월액 지급)

<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0일 기준 상한액)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추가 지원금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480,000

※ 재택치료 중 전원(병원, 생활치료센터 등)한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 지원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Q1.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합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셰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장애·70세 이상(예방접종완료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Q2.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다음의 경우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 ①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
 - ② 70세 이상의 확진자
- (보호자 요건)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앱(ICT) 등 활용 능통 필요, 70세 이상 확진자 및 보호자는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가능

Q3.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합니다. 단 70세 이상의 경우는 예방접종완료자여야 합니다
 - * 재택치료 시작 전 마지막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이어야 함
- 다만,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Q4. 가정 내에 소아를 포함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 소아와 가족·동거인이 모두 확진자로 확인된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동시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촉자가 아닌 동거인(확진자)은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준하여 공동 격리가 불가능합니다.
- 확진된 가족·동거인에게 입원·시설치료가 시행되거나, 접촉하지 않은 동거인이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Q5.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만 12세이상)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은 1일 3회 실시*
 - * 집중관리군은 2회 유선통화, 취침 전 또는 오전9시 이전 추가 상담 실시
-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됩니다.
 - *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만 12세이상)는 재택치료키트에 포함·제공
 - * 증상 변화,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 추가 가능

Q6.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상황에 따라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 * 다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 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대각선으로 앉아야 하고, 창문을 열고 운전해야 합니다.
-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 또는 119구급대**로 연락하면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될 수 있습니다.
-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전화 상담·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 여부가 결정됩니다.

Q8.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입니다.
 - 다만 '21년 12월 6일부터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기간이 변경 (10일→7일) 되어 마지막 3일은 자가격리에 준한 관리를 합니다.

Q9. 공동 재택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해제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 공동 재택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먼저 격리해제 되는 자의 해제일이 재택치료중인 가족의 건강모니터링 기간(7일간)이 종료하지 않았다면 공동격리를 지속해야 하나 건강관리(7일간)이 종료되고 자가격리가 시작되는 날(8일차) 부터는 격리가 해제되어 외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 격리해제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는 동거인이 거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면, 본인의 재택치료 해제 일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Q9.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요?

- **(예방접종완료자)** 환자가 치료 8일째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격리해제 가능하며, PCR 검사를 수행합니다. (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 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추가격리 중 PCR 검사(본인 소유 차량 등 이용)가 필요합니다.

☞ PCR 검사: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시, 격리해제 전(9일째)

※ 자가검사키트가 제공되는 경우, 추가격리 기간 자가검사키트로 자가진단하여 양성일 경우는 즉시 보건소에 연락하여 PCR 검사시행

※ 과거 확진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추가격리 적용하나, 보호자 및 동거인이 재택치료자와 동일감염집단의 감염자인 경우 추가 격리 및 격리해제 PCR검사 불필요

Q10.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Q11.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요?

-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은 일부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 참고.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범위 >

구분	허용 범위	준수 사항	관리 방안
보호자	· 본인 진료	· (외출전) 탈의(환복) 및 손 씻기 · (외출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이동시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외출사유 발생 시 재택치료추진단 에 사전 유선 연락 · 재택치료추진단 은 외출사유 검토·승인 및 준수사항 교육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그 외 공동 격리자	· 본인 진료 · 재택치료자 비대면진료 시 처방된 약 수령	· (외출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 격리관리 전담공무원 은 공동격리자 외출 중 무단 이탈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외출자는 복귀 후 재택치료추진단 에 유선 연락

* 접종 미완료자는 제외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추진단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Q12. 재택치료 보호자가 4종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진환자의 분비물 등을 접촉 시에는 재택치료 환자의 보호자도 감염예방을 위하여 **4종 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 다만, 지속적으로 4종 보호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마스크와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확진환자와 **접촉 전과 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만 합니다(손씻기, 손소독제로 소독하기).

Q13.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후 일반쓰레기는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소독하고 배출하면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소독 후 분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후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 재택치료(10일) 종료 후 배출

Q14.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방대본)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 ※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격리자(연월차 등)
 -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21년 4.1. 0시 이후) 미이행자
 - 해외입국 격리자('20년 4.1. 0시 이후 입국자)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재택치료 통지를 받은 자 포함)에 대해서는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일 경우에는 추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준용(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응자는 접종자로 인정)
- ※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격리자 및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21년 4.1. 0시 이후) 미이행자
 - 해외입국 격리자('20년 4.1. 0시 이후 입국자)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 비정규직 등이 기관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인정(증빙필요)
- ☞ 공동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음

- 생활지원비의 경우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가구원 수 별 생활지원비 >

(단위: 원 / 10일 기준 상한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비고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격리대상자
추가 생활지원비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백신접종자에 추가 지원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 재택치료 10일 기준 상한액으로 치료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일분 범위 내 지급

Q15.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16. 재택치료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있는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공기를 통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환기 수칙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다만, 드물게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여건에서 화장실 내 배기 덕트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호실 간 배기덕트의 역류방지 댐퍼가 부실한 경우
 - 하수구 장기간 미사용으로 공기 역류를 방지하는 봉수가 불충분한 경우
 - 노후화된 건물의 경우
- 따라서 재택치료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기본환기수칙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환기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
 - ※화장실 이용 후에는 무과 창문을 열어 유해 물질이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 실시 후 닫은 상태 유지
- 기계 환기 설비가 있을 경우 외기 도입 모드로 운전 (내부순환모드 지양)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 참고 자료: 「슬기로운 환기지침(가이드라인)」(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10.27.)

동 자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관련하여 유형별 업무 흐름도와 담당자별 주요 업무를 제시하고자 마련한 것이므로,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업무 매뉴얼

2021. 12.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I. 재택치료 준비 3

- | | |
|---------------------|---|
| 1. 종합체계도 | 3 |
| 2. 조직 구성 및 역할 | 4 |
| 2-1. [유형1] 지자체 주도형 | 4 |
| 2-2. [유형2] 의료기관 주도형 | 5 |

II. 재택치료 시작 6

- | | |
|------------------|---|
| 1. 대상 확정 및 통보 | 7 |
| 2. 재택치료자 준비 및 교육 | 8 |

III. 재택치료 중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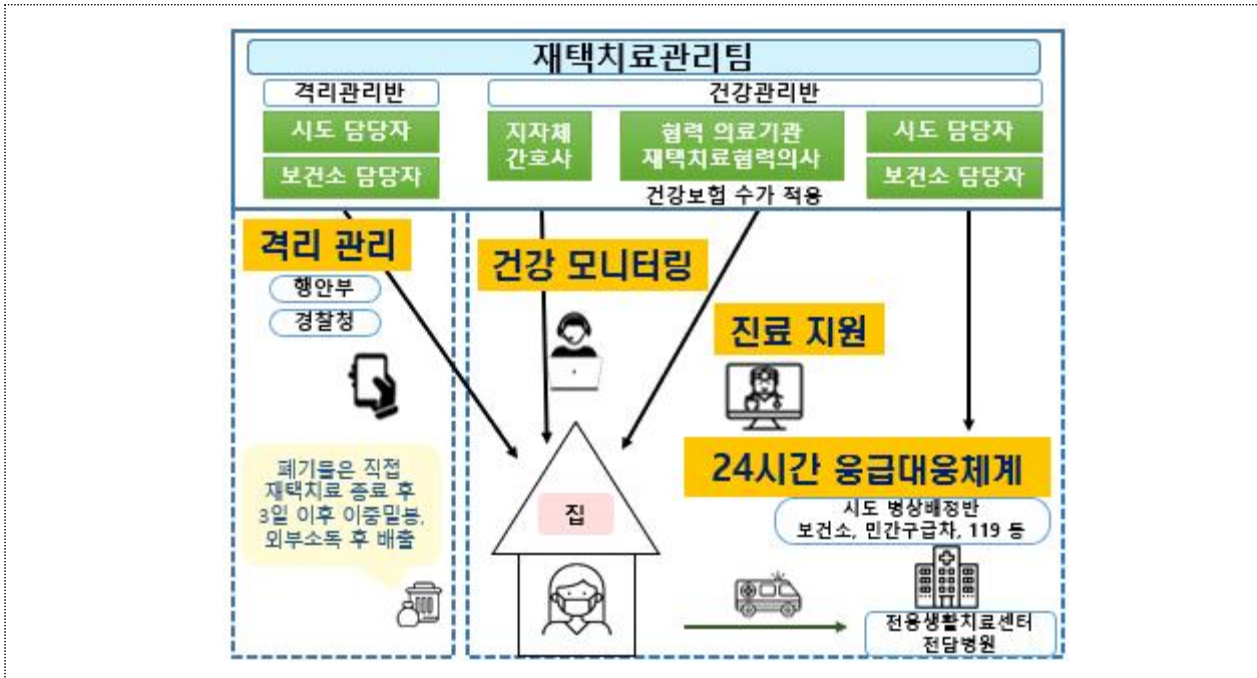
- | | |
|--------------|----|
| 1. 건강 관리 | 10 |
| 1-1. 건강 모니터링 | 10 |
| 1-2. 비대면진료 | 11 |
| 1-3. 시설 이송 | 12 |
| 2. 격리 관리 | 13 |

IV. 재택치료 종료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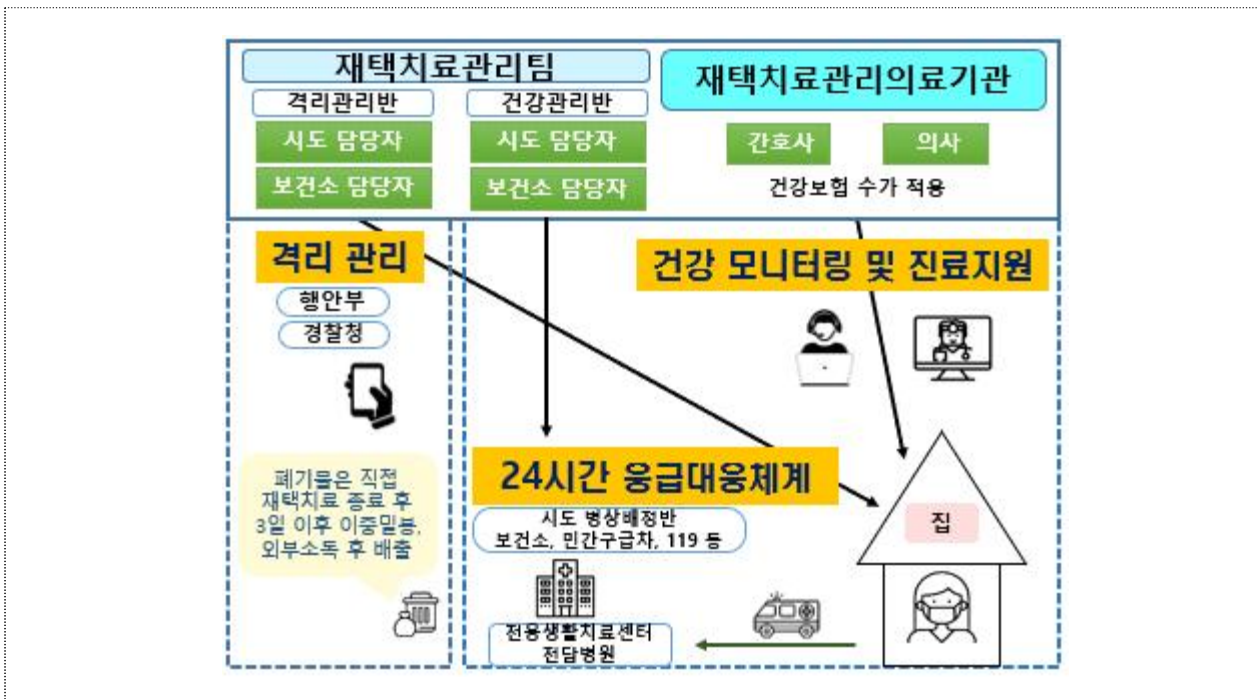
- | | |
|----------------------|----|
| 1.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 15 |
|----------------------|----|

1. 종합체계도

[유형1] 지자체 주도형



[유형2] 의료기관 주도형



2-1. 조직 구성 및 역할: 유형1

<전담 조직 등 기관별 구성 및 역할: 예시>

조직		구성	역할
재택치료관리팀	건강관리반 (보건부서)	• 시도 공무원 • 보건소 공무원 • 간호사 등 - (소속) 시도 및 시군구 • 재택치료협력의사 - (소속) 지역 내 협력 의료기관 • 행정담당자 - (소속) 보건소 외	• 재택치료자 건강 관리 총괄 -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동의 여부 확인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설치 지원 및 교육 - 건강 모니터링 - 비대면진료 - 재택치료 중 중증화 환자 관리: 응급 이송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이송 연계 및 의료기관 및 병상 배정 - 재택치료 건강상태 평가 및 해제 - 보호자(공동 격리자) 추가격리 및 검사 후 해제 안내 - 재택치료 비용 중 환자부담금 등 정산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시작일, 격리해제일, 전원정보 입력)
	격리관리반 (행정부서)	• 시도 공무원 • 보건소 공무원 • 행정담당자 - (소속) 보건소 외	• 재택치료자 격리 관리 총괄 -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통한 관리 - 재택치료키트 제공 및 사용법 교육 - 생활필수품 등 물품 지원 - 폐기물 관리 - 재택치료 중 무단이탈 환자 관리: 이탈 여부 점검, 무단이탈자 위치 파악, 귀가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관리
시·도 환자관리반 (병상배정반)		• 시도 공무원	• 재택치료자 확정 • 재택치료자 이송 필요 시 병원 확인
감염병 전담병원 전용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단가·외래진료센터		• 의료팀	• 이송 환자 격리 및 의료 제공
약국		• 약사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약 제조 • 수령자 대상 비대면 복약 설명
이송팀		• 보건소 • 민간 구급차 • 119	• 이송 의뢰 접수 및 구급차 배정 • 환자 집·시설 및 시설-시설 간 이송 • 119는 응급상황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2-2. 조직 구성 및 역할: 유형2

<전담 조직 등 기관별 구성 및 역할: 예시>

조직		구성	역할
재택치료관리팀	건강관리반 (보건부서)	• 시도 공무원 • 보건소 공무원 • 행정담당자 - (소속) 보건소 외	• 재택치료자 건강 관리 총괄 - 재택치료 대상자 동의 여부 확인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설치 지원 및 교육 - 재택치료 중 중증화 환자 관리: 응급 이송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이송 연계 및 의료기관 및 병상 배정 - 재택치료자 해제 - 보호자(공동 격리자) 추가격리 및 검사 후 해제 안내 - 재택치료 비용 중 환자부담금 등 정산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시작일, 격리해제일, 전원정보 입력)
	격리관리반 (행정부서)	• 시도 공무원 • 보건소 공무원 • 행정담당자 - (소속) 보건소 외	• 재택치료자 격리 관리 총괄 -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 지원 및 교육 - 재택치료키트 제공 및 사용법 교육 - 생활 필수품 등 물품 지원 및 폐기 안내 - 재택치료 중 무단이탈 환자 관리: 이탈 여부 점검, 무단이탈자 보고 및 조치(위치 파악, 귀가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관리)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시·도 환자관리반 (병상배정반)		• 시도 공무원	• 재택치료자 확정 • 재택치료자 이송 필요 시 병원 확인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 의사 • 간호사 • 행정담당자	• 재택치료자 건강 관리 - 재택치료 대상자 임상적 위험도 검토 - 24시간 건강 관리 및 진료 - 재택치료 해제 평가
감염병 전담병원 전용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단기·외래진료센터		• 의료팀	• 이송 환자 격리 및 의료 제공
약국		• 약사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약 제조 • 수령자 대상 비대면 복약 설명
이송팀		• 보건소 • 민간 구급차 • 119	• 이송 의뢰 접수 및 구급차 배정 • 환자 집·시설 및 시설-시설 간 이송 • 119는 응급상황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II

재택치료 시작

<업무 개요>

[유형1]

- ◆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은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 시 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의료진의 의견을 들어 재택치료자를 결정 후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하거나 기초역학조사 후 시도 병상배정반 확인을 거쳐 재택치료추진단에 통보, 확정된 재택치료자에게 비상연락망과 생활수칙 등을 안내하고,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앱 설치 교육
- ◆ **재택치료추진단 격리관리반**은 재택치료자에게 재택치료키트 및 생활필수품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지원하고 교육

[유형2]

- ◆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재택치료추진단 보건소 의료진**은 재택치료 대상자의 동의여부와 임상적 위험도를 검토
- ◆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은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 시 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의료진의 의견을 들어 재택치료자를 결정 후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하거나 기초역학조사 후 시도 병상배정반 확인을 거쳐 재택치료추진단에 통보, 확정된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앱 설치 교육
- ◆ **재택치료추진단 격리관리반**은 재택치료자에게 재택치료키트 및 생활필수품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지원하고 교육

1. 대상 확정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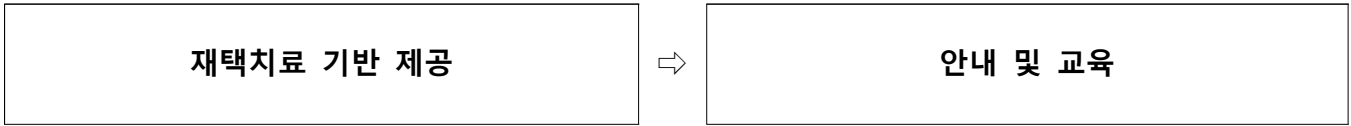
1) **[유형1]** (건)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보건소 의료진
[유형2]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재) 의사 또는 보건소 의료진

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 [서식 1] 재택치료 대상 분류 시의 추가 질문지 및 환자 상태 기록지
- [서식 2] 입원·격리 통지서
- [서식 3] 격리통지서 수령증
- [참고 3] 재택치료 안내문(예시)
- [참고 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방법

2. 재택치료자 준비 및 교육

<업무 흐름도>



세부업무	
(건) 행정 담당자	- 환자 및 공동 격리자(보호자 및 동거인)에게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앱 설치 지원 - 비대면진료 환경 마련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시작일 입력
격리 관리 반 (격) 행정 담당자	- 전담공무원 지정 - 환자 및 공동 격리자(보호자 및 동거인)에게 재택치료키트, 생활필수품 등 제공 - 환자 및 보호자(공동 격리자)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세부업무	
(건) 행정 담당자	- 환자 및 공동 격리자(보호자 및 동거인)에게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개요 및 비상연락망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앱 사용법
(격) 행정 담당자	- 환자 및 공동 격리자(보호자 및 동거인)에게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 재택치료키트 구성품 및 사용법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사용법 - 격리 및 방역수칙 - 생활필수품 지원 - 폐기물 처리

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 [서식 11]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 신청서
- [서식 12]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관리자 보안서약서
- [서식 13]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 (예시)
- [참고 2] 안전한 재택치료 격리관리 및 이탈자 대응 요령
- [참고 5]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 [참고 7] 재택치료키트 구성품
- [참고 9]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운영 절차 안내

<업무 개요>

[유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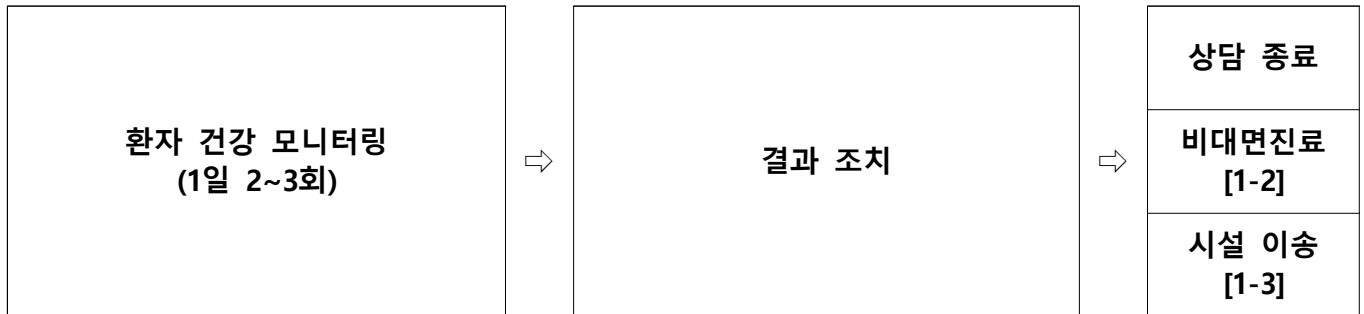
- ◆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은 건강 관리를 총괄하고 중증화 환자를 중점관리
 - 간호사는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 의사는 필요 시 비대면진료 및 시설 이송 여부 결정
 - 행정담당자는 24시간 응급 대응이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환자관리반(병상배정반)이 배정한 의료기관 및 병상으로 이송 연계
- ◆ **재택치료추진단 격리관리반**은 격리 관리를 총괄하고 무단이탈 환자를 중점관리
 - 행정담당자는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통한 격리 관리, 생활필수품 등 물품을 제공, 폐기물 처리를 지원
- ◆ **보건소 등 이송팀**은 전용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 (119는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유형2]

- ◆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 건강 관리
 - 간호사는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 의사는 필요 시 비대면진료 및 시설 이송 여부 결정
- ◆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은 건강 관리를 총괄하고 중증화 환자를 중점관리
 - 행정담당자는 24시간 응급 대응이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환자관리반(병상배정반)이 배정한 의료기관 및 병상으로 이송 연계
- ◆ **재택치료추진단 격리관리반**은 격리 관리를 총괄하고 무단이탈 환자를 중점관리
 - 행정담당자는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통한 격리 관리, 생활필수품 등 물품을 제공, 폐기물 처리를 지원
- ◆ **보건소 등 이송팀**은 전용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 (119는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1-1. 건강 관리: 건강 모니터링

<업무 흐름도>



세부업무	
간호사 등 ¹⁾	- 환자의 자가모니터링 결과 확인 1일 1회는 반드시 전화 등 구두 상담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은 1일 3회 실시 - 불가피하게 재택치료 대상자와 대면 시에는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 일회용장갑, 안면보호구,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세트 착용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모니터링 8일째 종료 가능

세부업무	
간호사 등 ²⁾	- 특이사항 없을 시 상담 종료 - 진료 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팀에 연락 및 비대면진료 의뢰·요청 - 이송 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팀에 연락 및 이송 의뢰·요청 - 진료지원시스템에 건강 모니터링 결과 입력 24시간 동안 환자상태(임상증상 등)에 대한 의무기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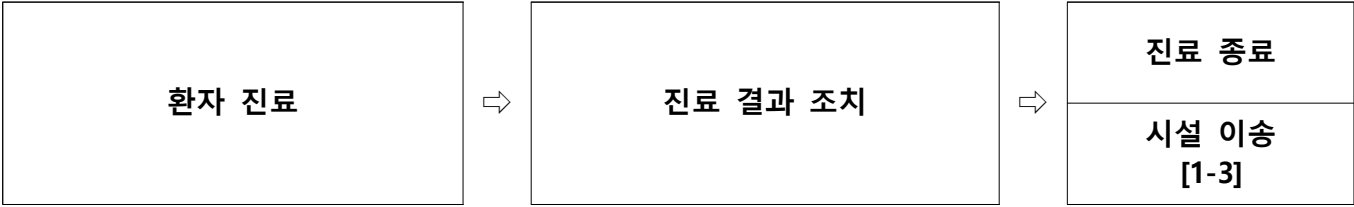
^{1),2)} [유형1] (건) 간호사, [유형2] (재) 간호사

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고 9]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등록·운영 절차 안내

1-2. 건강 관리: 비대면진료

<업무 흐름도>



세부업무		세부업무	
의사 1)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진료(전화 또는 화상통신) 시행	의사 2)	- 진료 결과 처방전 발급 - 이송 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팀에 연락 및 이송 의뢰·요청 - 진료지원시스템에 입력 24시간 동안 환자상태(임상증상 등) 또는 비대면진료내역에 대한 의무기록 작성
		(건) 행정담당자	-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조제약품을 환자에게 전달
		약사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약 제조 - 수령자 대상 비대면 복약 설명

1),2) [유형1] (건) 재택치료협력의사, [유형2] (재) 의사

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서식 8]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및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관련 서식
	[서식 9]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참고 6] 재택치료협력의사·관리의료기관 안내문
	[참고 8] 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대리처방 허용방안

1-3. 건강 관리: 시설 이송

<업무 흐름도>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이송 대상자 발생 시 조치	
세부업무		세부업무	
(건) 행정담당자	- 비상연락체계 구축 (재택치료추진단↔재택치료자/시설/소방본부) - 충분한 수의 구급차 확보 (지역소방본부와 정보 연계, 보건소, 민간 구급차 등 활용) - 이송 가능 의료기관 사전 지정·확보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전원(이송)정보 입력(전원기관명, 전원일자, 전원사유)	간호사 등 ³⁾	이송 필요 시 의사에게 연락
		의사 ⁴⁾	- 환자 중증도 판단 - 환자 이송 여부 결정 - 이송 결정 시 재택치료추진단 행정담당자에게 연락
		시도환자관리반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및 병상 배정 ※ (응급이송) 응급 시에는 병상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담병원으로 이송
간호사 등 ¹⁾	응급 이송 상황 대비 24시간 연락체계 유지	(건) 행정담당자	- 이송 의료기관 연락 및 이송 필요 서류 구비 등 이송 준비 - 사전 연계된 구급차 등 이송 요청
의사 ²⁾	응급 이송 상황 대비 24시간 연락체계 유지	이송담당자	- 배정된 의료기관(시설)으로 환자를 이송 -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자료는 지퍼백 등에 담아 전달 - 이송 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이송참여인원 및 동승하는 보호자 등은 적절한 보호구(4종 보호구* 등) 착용 * 마스크(KF94, N95 이상 또는 동급이상),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1),3) [유형1] (건) 간호사, [유형2] (재)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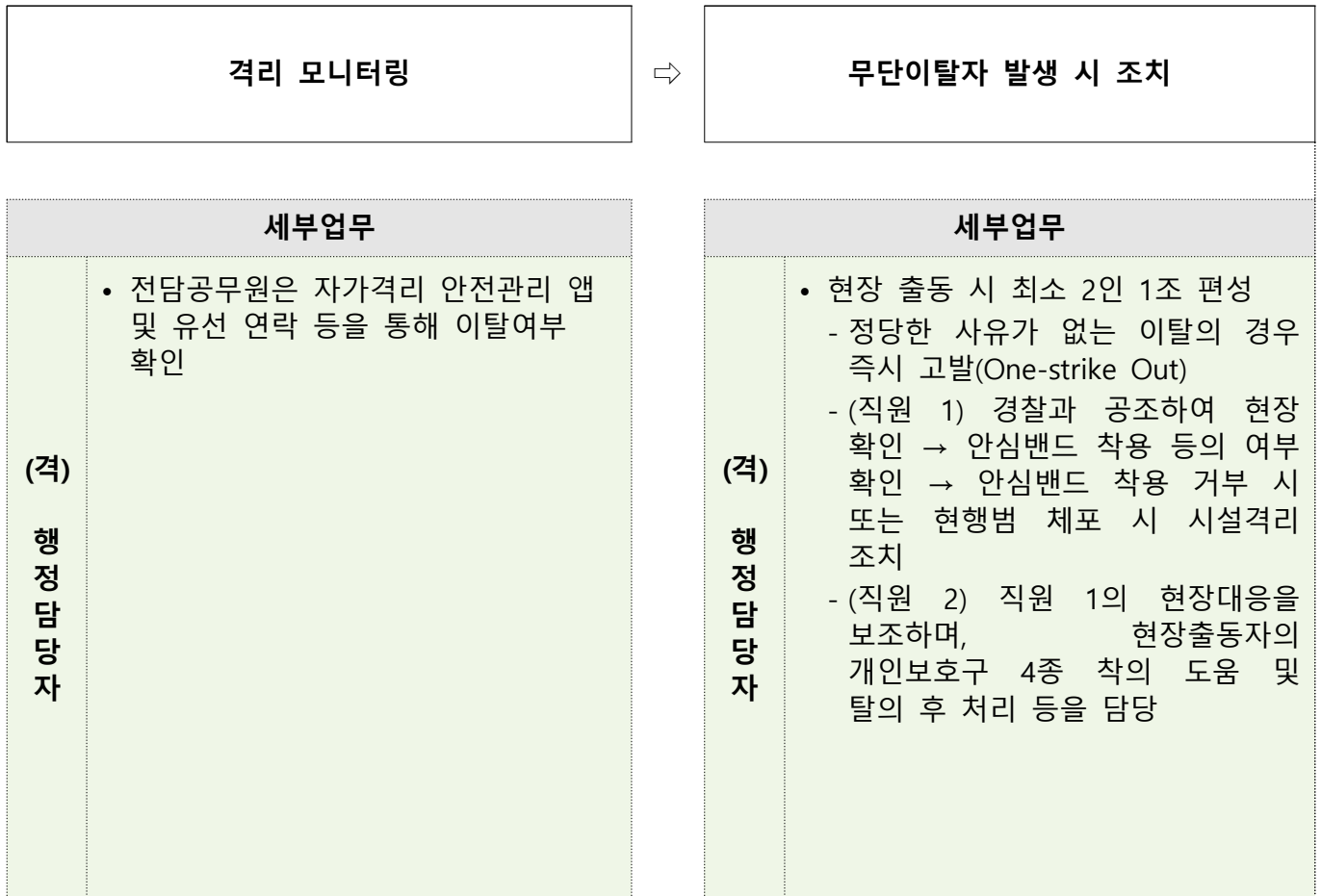
2),4) [유형1] (건) 재택치료협력의사, [유형2] (재) 의사

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고 10] 응급 상황 시 대응방안 흐름도

2. 격리 관리

<업무 흐름도>



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고 2] 안전한 재택치료 격리관리 및 이탈자 대응 요령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6. 무단 이탈자 관리)

Ⅳ

재택치료 종료

<업무 개요>

[유형1]

- ◆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은 재택치료 해제 대상을 정하고 보호자(공동 격리자) 추가 격리 및 검사를 안내하며 재택치료 비용을 정산

[유형2]

- ◆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재택치료 해제 여부를 평가하고 재택치료 비용을 청구
- ◆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은 재택치료 해제 대상을 정하고 보호자(공동 격리자) 추가 격리 및 검사를 안내하며 재택치료 비용을 정산

1.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업무 흐름도>



세부업무		세부업무		세부업무	
의사 ¹⁾	- 재택치료자의 건강상태 평가 후 재택치료 해제 여부 판단 - 재택치료추진단에게 재택치료 해제 대상자 알림	(건)	행정담당자	(건)	행정담당자
			- 재택치료자에게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령증 받기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청구한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지급여부를 검토하고 비용 지급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시군구) 격리해제 입력		보호자(공동격리자) 추가 격리 및 검사 후 해제 안내 ※ 재택치료자가 8일째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공동격리자(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해제 가능

¹⁾ [유형1] (건) 재택치료협력의사, [유형2] (재) 의사

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 [서식 8]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및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관련 서식
- [서식 9]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 [서식 10] 격리해제 확인서
- [참고 12] 격리해제자 안내문(예시)
- [참고 13]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